태와 감호자의 실상, 가출소 후의 감호자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즐비합니다.

자세한 통계와 검증된 사실을 일일이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런 주장을 펼쳐야만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만 감호자로서는 이런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증빙(證憑)자료를 일일이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반인권적인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하루가 다르게 인권이 신장되고 국민의 의식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멀지 않은 장래에 사회보호법은 반드시 위헌(違憲)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만 많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불거질 많은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이 기회에 사회보호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감호자를 대상으로 현실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위헌(違憲)·위법성(違法性)과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반(反)하는 법의 집행 실태, 반인권적(反人權的)인 요소(要素) 등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보호법은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수단의 하나였던 삼청교육의 인권침해 실상을 은폐할 목적으로 삼청교육 대상자 중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 등을 재수용(再收容)하여 삼청교육이 사회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법'을 모방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의 모범(模範)이 되었던 '사회안전법'도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이미 폐지되었는데 그 자식격인 사회보호법은 아직도 버젓이 존재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어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또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나 사회보호법은 '사회안전법'의 폐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비전향 장기수가 형기를 종료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재수용하는 것은 아무리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 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금 자체로 형벌이라고 보아 '사회안전법'과 보안감호소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 폐지의 배경에는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존중의 논리와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그리고 통일 을 지향하는 시대적 사명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목적의 범죄를 저지른 반국가적 사범조차도 그 형을 종료 또는 면제받았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시대적인 흐름이 북한과 교류가 빈번해 지고 통일을 지향하는 시점이라고 하여 국가전복사범까지 형기를 마쳤으므로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가 고파 사과 8개를 훔친 사람 등 차마 죽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감호자는 중구금하여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이것이 어찌 상식이 통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전향 장기수들도 감호자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범법자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들의 범죄가 사상의 문제라고 하여 그들을 재수용 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구금이어서 이중처벌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일반 잡범인 감호자는 민주국가를 전복시킬 사상을 갖지 못한 못 배우고 무식한 존재라고 하여 재수용하여 자유를 침해하고 중구금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상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므로 분명히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살펴보더라도 '사회안전법'의 폐지나 보안감호소의 철폐에 견주어 보면 사회보호법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보호감호소도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호법이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의 수단 또는 인권탄압을 은폐하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해진 점과 나날이 인권이 신장되어 가는 시대적 배경,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여야 마땅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가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세계적인 위상 등을 고려 할 때 사회보호법은 지금이 폐지시켜야 마땅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신문에 보호감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모든 사람은 교도소 담벼락 위에 서 있다가 자칫 잘못하면 안으로 떨어지고 운이 좋으면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돈이 많아서건, 배경이 좋아서건, 검사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조건에서든 운이 좋아서든 보호감호를 안 받았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 행운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호감호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방이 철창이고 15척의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으며, 보고 싶은 부모형제 사랑하는 처자식을 마음대로 못 보는 것은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5, 6년만 살아보십시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엄동설한에 사방이 콘크리트요 쇠창살에 철문(鐵門)인 차가

운 마루바닥에 비닐창문으로 추위를 가리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살을 에는 추위에 찬마루바닥에 누워 체온으로 담요를 데우며 5, 6년을 살아보십시오.
찌는 듯한 무더위에 2.2평의 방에 4, 5명이 각자 개인의 소지품과 침구를 한쪽 구석에 정리하고 남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몸서리치게 증오하며 선풍기 한 대 없이 5, 6년을 살아보십시오.
해묵은 쌀과 보리가 섞인 푸석푸석한 밥에 한 끼에 돈으로 환산하여 400원쯤 되는 부식으로 삼 시 세 끼를 해결하며 5, 6년만 살아보십시오.(별첨4. '피보호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참조)
부처님도 예수님도 아무런 죄 없이 이런 환경에서 5, 6년을 살고나면 저절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증오가 생길 것이며 공자님도 저절로 입에서 불만과 욕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전과자인 감호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감호자 한 사람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감호자의 부모형제, 가족, 친지, 선후배, 지인들과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의 인권까지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사회보호법으로 인해 자랑스런 우리 조국이 <인권을 짓밟는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이 법이 폐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호자와 감호자의 가족친지·지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호소문을 올립니다.

끝으로, 다소 억지스럽고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주장도 없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감호자의 억울함이 도를 넘어 울분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감호자의 의견을 취합(聚合)한 결과를 글로 정리하느라 다소 과격하고 아전인수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을 작성하면서 오로지 한이 있다면 말이나 글이 마음과 현실을 곧이곧대로 다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무지한 감호자가 몇 달에 걸쳐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여 작성한 이 문건이 휴지통에 쳐박혀 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전과자인 저희 감호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호자들도 끊임없이 반성에 반성을 거듭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노력에 용기를 주시고 저희 감호자들이 정말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위해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심정으로 저희 감

호자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2002. 12. 27.

청송제2보호감호소 감호자 재감번호 259번
조 석 영 드림

별첨1. 근로보상금 예탁금 총액(2002. 10. 31 현재)

수 번	성 명	금 액
1	박경숙	189,803
2	김문옥	772,421
3	양숙현	-
4	윤미용	805,628
5	윤미희	2,270
6	박수경	58,850
7	최춘심	1,621,043
8	전혜숙	97,950
9	최경옥	66,790
10	김복기	61,926
11	김영옥	141,929
13	박화자	16,468
14	박복순	33,407
15	박혜자	50,942
16	정민자	2,661
17	정해녀	2,686,742
18	신후연	43,471
19	김영애	33,407
20	송을호	239,051
21	윤사재	1,734,808
24	이소영	-
25	유명순	-
26	김양자	57,689
27	최병애	83,853
28	최윤정	-
29	신부덕	58,455
30	김태미	33,877
31	홍명자	25,382
32	정현숙	-
33	김외숙	167,727
34	매복순	-
35	이순자	631,564
36	조순덕	8,758
37	이영진	20,150
38	신영신	9,471
39	정명득	17,704
40	전영숙	54,013
90	홍금숙	164,440
101	임병수	835,535
102	유성현	54,710
103	문광우	130,011
104	김문천	1,661,438
105	목영신	166,244
106	양운용	104,666
107	이장현	519,733
108	김명수	253,309
109	고영건	50,577
110	김형오	173,456
111	권경길	502,153
112	고승진	144,303
113	김원식	155,243
	소 계 :	14,744,028

수 번	성 명	금 액
114	박순창	481,986
115	정창식	57,659
116	조영제	132,954
117	박유복	744,449
118	정영도	71,465
119	김태완	57,437
120	전병률	60,576
121	김용호	60,121
122	유승민	725,559
123	김동규	774,942
124	장재익	-
125	홍종근	78,504
126	진원유	434,391
127	김용구	40,661
128	김시운	816,589
129	류귀용	716,540
130	남태원	57,855
131	송윤식	50,983
132	강호영	107,042
133	유영삼	58,513
134	박근환	117,451
135	하인섭	453,745
136	박경태	37,881
137	박범식	480,947
138	이명근	1,103,683
139	김성수	792,525
140	김원호	21,015
141	한호상	1,713,189
142	서광석	1,391,303
143	이성철	514,505
144	진대오	1,373,143
145	송명수	447,957
146	정용길	-
147	김영철	71,139
148	방영수	55,629
149	정성만	88,809
150	김혁원	465,104
151	김일지	842,960
152	배효영	183,828
153	김종식	2,346
154	김종섭	115,373
155	김경배	134,848
156	이경문	274,924
157	조재훈	974,033
158	윤종대	54,253
159	백근호	61,510
160	김석두	905,551
161	이석주	352,295
162	장인영	285,146
163	장삼수	225,387
164	홍금태	203,888
	소 계 :	19,272,593

수 번	성 명	금 액
165	방희웅	38,712
166	이강국	121,808
167	이준희	274,671
168	이기철	51,861
169	김영	25,453
171	여동윤	243,770
172	이재춘	240,205
173	김재형	119,946
174	홍순한	87,854
175	오원규	57,351
176	이병택	755,073
177	이성영	327,669
179	박종철	341,078
181	김철한	1,017,816
182	윤덕현	950,174
183	정이표	1,617,135
184	성천운	125,106
185	홍석원	-
186	김영인	1,229,107
187	김남종	706,434
188	임성구	179,820
189	이점돌	332,416
190	이재호	175,301
191	김순태	196,187
192	김철	183,694
193	김용하	1,154,852
194	김용환	614,089
195	임흥섭	195,012
196	이명룡	63,508
197	한상호	250,561
198	김용성	429,883
199	이복현	293,038
200	이광희	334,605
201	장기석	183,848
202	구정태	94,318
203	방대문	178,252
204	이창기	3,205,217
205	소태연	779,472
206	이충남	103,409
207	최창구	132,157
208	김명수	245,540
209	김태주	69,268
210	이기준	253,544
211	이춘기	252,640
212	박동석	96,961
213	조진호	564,571
214	이인성	1,110,482
215	최현식	109,742
216	이종호	27,179
217	장상달	913,128
	소 계 :	21,053,917

수 번	성 명	금 액
218	임상종	134,210
219	이성열	82,354
220	하영국	408,801
221	김갑중	2,421,576
222	강명호	681,820
223	이만엽	56,414
224	장동헌	54,765
225	천성복	1,026,725
226	권경암	2,339,266
227	이기화	144,134
228	김웅식	54,471
229	이기준	57,711
230	윤철	36,907
231	장재식	175,622
233	전정환	22,591
234	배병수	412,663
235	박기성	127,581
236	김영철	1,744,619
238	손대식	232,702
239	황규성	262,884
240	오규명	-
242	박영창	1,420,996
243	남경호	85,396
245	송필상	716,012
246	김재명	83,251
249	조만수	67,280
250	김은수	450,892
251	장상철	1,435,578
253	김정호	175,082
254	구호진	151,734
257	김형식	736,526
259	조석영	86,295
260	함영범	862
261	최상일	1,531,749
262	손종태	652,804
263	이정섭	330,120
267	강봉식	213,821
268	최문철	54,212
269	최영범	259,544
270	김준태	790,107
271	김희갑	350,337
272	이양훈	209,754
273	도재환	591,422
274	김기윤	256,796
275	김교진	377,525
276	임노선	319,381
277	고광섭	57,515
278	변영수	151,423
279	윤상식	2,526,790
280	임광영	2,394,161
	소 계 :	26,955,181

수 번	성 명	금 액
281	백선호	464,375
283	배성수	1,059,680
284	배기선	269,703
285	최원일	112,010
286	김경섭	73,907
287	황영하	930,752
288	송이석	97,849
289	윤종호	464,836
290	전영배	1,727,114
291	고경호	1,003,647
292	주금선	797,628
293	이정환	182,718
294	맹관균	1,150,896
295	이철규	799,934
297	조영식	1,972,252
299	이영희	131,713
302	김길운	489,490
303	김용남	4,516
304	김복만	416,579
305	정재구	513,860
306	주인종	108,469
308	조남익	11,195
310	양평익	284,692
312	김재훈	5,656
314	주인철	114,033
315	유정현	34,818
316	전호찬	83,235
318	최홍규	1,048,370
319	이세영	146,976
320	장성철	170,427
321	이두성	69,449
322	박대성	162,659
324	최규태	192,389
325	김경석	396,851
326	김성진	117,795
328	이대영	218,521
329	변오균	121,214
330	최승연	200,047
333	유성도	1,042,672
335	정만호	180,409
336	신창식	93,361
337	심재봉	831,717
338	정병조	507,672
339	김성재	50,725
341	조충신	365,617
342	함영하	1,364,715
343	김갑영	10,018
344	김종형	59,070
345	박영철	1,449,224
346	박광훈	521,551
347	이무성	3,558,781
348	이수열	51,459
	소 계 :	26,237,246

수 번	성 명	금 액
349	정영수	103,191
350	김병학	165,533
351	서금안	1,992,711
352	김대근	58,210
353	김선배	–
354	김우태	968,347
357	황미남	313,772
359	전선기	437,099
360	이덕순	63,299
361	김응석	51,100
362	박창규	493,899
363	우성환	51,563
364	백홍식	152,224
365	김용석	21,460
367	강덕재	99,099
369	이귀형	36,063
371	백정민	89,442
373	류용권	621,658
374	문상수	103,816
375	임춘기	845,494
377	장석철	715,474
378	박덕인	1,970,264
380	권성복	1,265,884
381	김종재	49,894
382	이종봉	868,560
383	유헌수	68,473
384	어도경	153,660
385	고정현	439,214
386	오장환	254,660
387	김용관	189,515
388	김용원	658,368
391	천용민	1,142,450
393	이상우	91,498
394	이호정	83,648
396	은쟁표	43,451
397	김홍규	304,898
398	박정호	54,239
399	장용준	725,210
400	윤명희	561,135
401	김명수	517,762
404	손주호	87,556
405	김사봉	290,561
406	김귀훈	427,822
408	안안식	36,706
411	김용대	1,465,818
412	태주환	64,084
413	이강선	59,355
415	정규도	559,452
416	김종운	96,018
417	김남호	76,143
418	장영배	79,092
	소 계 :	20,068,844

수 번	성 명	금 액
419	김원술	1,930,527
420	박동열	124,647
422	손천수	2,018,257
423	신동순	239,953
426	고한철	3,644,774
427	서중현	2,445,351
428	김인송	390,602
430	김진규	638,194
431	오성수	2,404,646
432	최영대	265,928
435	김재영	223,784
437	남희진	151,995
438	정용문	487,489
439	조천길	98,347
441	김일성	240,220
442	유철재	54,982
445	조규석	9,800
447	백용호	55,378
448	김종합	92,895
449	김공식	3,317,415
450	김맹식	59,983
452	최문환	125,288
454	김홍칠	426,405
456	강대복	471,396
458	이병철	78,265
459	박용범	170,770
460	박태근	352
461	박시영	865,797
462	채연호	58,105
463	전상택	65,251
465	유금종	56,781
466	정현철	73,996
467	김일경	1,162,572
468	최인선	1,240,952
469	김희주	1,213,767
470	오경식	656,831
472	전기태	576,846
473	박영우	114,570
474	육창진	165,835
476	최옥섭	1,749,963
478	최인식	129,825
479	박수훈	389,795
480	김춘웅	536,630
481	이창언	1,321,260
484	이상직	559,690
486	손호운	958,812
487	김성일	471,989
488	서석주	60,919
489	지칠용	1,706,754
490	신용균	666,670
492	길장숙	807,070
	소 계 :	35,778,323

수 번	성 명	금 액
497	이봉구	–
498	오세욱	146,307
502	이용장	423,320
503	유기환	1,864,421
504	김일순	2,395,260
505	이영철	102,311
507	권혁찬	893
508	김정태	196,955
511	이정만	1,910,739
513	김영곤	138,102
517	이재남	59,148
518	김점석	82,055
520	박효진	359,207
521	박옥철	170,665
522	김명환	178,225
523	김성수	227,016
525	박창기	246,466
526	남병현	91,943
529	김일수	735,516
531	최연해	1,390,785
533	이종민	109,616
534	강종근	133,350
535	정해동	1,745,345
536	원홍윤	192,412
538	성장희	342,652
540	신임호	68,023
542	김영철	725,852
543	한용구	63,576
544	라광길	460,183
545	김광용	155,638
546	김정인	1,940,331
547	이상원	188,201
549	조광래	136,325
550	안해기	500,835
552	박무찬	1,283,740
554	신용성	98,276
556	방월석	1,421,757
557	이철수	1,356,472
558	박흥수	53,868
559	이현구	337,632
560	김동곤	261,066
563	박남북	541,882
565	황명수	583,973
567	이상환	1,337
568	박영재	381,622
571	정광채	153,321
572	유정수	89,305
574	김성호	135,166
575	유재돌	502,787
578	강희수	289,570
584	김종석	735,174
	소 계 :	25,708,621

수 번	성 명	금 액
585	위원일	59,874
587	이갑직	262,594
591	유권식	93,421
592	김금동	–
593	전병수	336,604
594	김진국	728,834
595	서경원	676,132
596	이대영	54,221
597	정석문	189,143
598	임길주	–
599	유기용	1,444,600
601	한상철	64,573
602	박성원	65,341
603	박형열	76,951
604	박관용	281,524
605	윤호영	68,084
606	주기열	541,791
607	김순태	758,213
608	문장원	3,741,003
609	양운모	344,330
611	이용수	192,119
612	당도봉	347,119
613	박진석	947,860
614	박흥수	793,172
615	황우정	110,807
617	신순철	236,123
618	진보현	103,252
619	정영문	218,945
620	한윤수	61,190
621	박길웅	57,726
622	조형근	859,383
623	박권수	–
624	김성기	106,761
625	주종열	55,025
626	이상호	57,853
627	임영수	135,545
628	김재균	34,436
630	김영수	657,862
631	정철홍	1,975,323
632	박춘식	107,139
633	우도영	425,510
634	김태주	70,729
636	안상학	55,567
637	신경술	98,510
639	박낙원	114,123
640	조병복	63,906
641	엄길용	1,404,919
643	서덕진	87,117
644	박용철	73,367
645	박광수	50,554
647	서호원	107,769
	소 계 :	19,396,944

수 번	성 명	금 액
649	박광호	53,598
650	박한규	23,292
651	조우창	136,029
654	박남수	31,411
655	강덕원	78,621
658	김수봉	605,585
659	송영철	72,825
660	박청옥	614,088
661	정운길	541,260
662	이정복	75,922
663	이태근	28,979
664	조정현	61,839
665	천택성	81,614
666	김대성	585,811
667	임동주	344,070
668	강영석	141,844
670	정의화	80,710
671	김양훈	256,586
672	신상묵	1,511,801
674	정소수	519,892
675	김동필	272,218
676	이성봉	172,863
677	김완길	1,213,179
678	김승길	1,290,533
679	이상본	97,483
680	박종준	657,809
681	신영길	53,915
683	김경상	50,869
684	김인걸	770,349
685	이상영	58,045
686	김상곤	78,968
687	임동철	124,787
688	박헌영	58,356
689	정민웅	52,785
690	최준규	156,474
691	김진영	3,098
692	우수희	52,479
693	김점암	–
695	양희택	521,983
696	노이수	761,116
698	정환관	254,823
699	김경권	1,239,353
700	김대성	36,379
702	이학민	67,971
704	김명철	73,239
705	김준복	127,256
707	한경식	130,101
708	김기태	81,874
709	허진	66,547
710	원삼영	1,906,157
711	이향원	493,376
	소 계 :	16,770,162

수 번	성 명	금 액
712	천점수	227,059
713	유금종	104,131
714	김진수	823,243
716	박상호	227,810
717	황병수	832,425
718	장식림	320,025
719	전인갑	70,928
720	김철중	100,265
721	고길남	1,317,381
722	조삼용	236,124
723	유복례	419,855
724	김익표	50,779
725	신동수	59,114
726	김삼도	314,279
727	김종구	685,241
728	송순근	218,479
729	조진령	58,711
730	최윤준	63,214
731	김창종	561,388
732	이은재	–
733	강인원	791,499
734	김병철	1,103,576
736	김준호	54,716
737	석주영	1,218,033
738	박오동	–
739	황형섭	55,212
741	김우형	730,294
742	김정섭	182,380
743	김기성	367,529
744	이춘길	92,663
745	유재인	476,217
746	최경옥	83,719
747	천동현	50,601
748	이주현	13,581
749	조진석	51,245
750	황호준	51,271
752	김상길	59,714
753	황춘호	1,206,986
754	오기곤	233,818
755	김우영	56,622
756	윤재민	1,658,723
757	박진용	1,911,152
758	오기석	579,006
762	이명승	193,585
763	김준면	72,825
764	함상규	451,367
765	강현태	126,824
767	김홍식	398,707
768	조원옥	413,532
769	김대수	142,721
770	김준오	1,210,113
	소 계 :	20,728,682

수 번	성 명	금 액
771	김영철	283,124
772	김정수	617,527
774	최병일	70,601
779	유영배	235,105
780	왕석균	1,082,143
781	천명진	98,425
783	노범수	551,965
785	권양부	122,998
786	이근호	49,486
787	조인철	242,756
789	장병일	19,769
790	박기원	58,368
791	김태근	74,310
792	권재완	771,288
794	황병환	130,530
795	박수복	258,668
796	채성모	70,044
807	이성배	87,051
808	조홍석	327,699
809	최경만	27,521
810	정치열	121,877
811	김재덕	304,487
813	박종호	1,086,488
814	안정근	1,867,458
815	송창림	–
816	모흥중	475,824
817	정현석	914,356
818	정문학	610,790
819	안승운	64
820	이승열	348,620
821	곽동현	141,929
822	지원근	139,787
823	김양기	525,373
824	박희옥	271,138
825	이만식	195,756
826	전길환	103,674
827	최기준	136,452
828	김기병	75,613
829	문동훈	157,922
830	서재걸	51,148
831	이용희	220,104
832	정규태	121,540
834	김경춘	64,034
835	부성태	65,204
836	박노영	4,727
837	김봉근	467,591
838	강달훈	27,638
839	이정연	112,859
840	김재환	94,630
841	서수배	63,835
842	김학권	219,679
	소 계 :	14,169,975

수 번	성 명	금 액
843	신철	443,277
844	김승환	395,042
846	문종호	131,363
847	민정태	608,162
848	공연진	325,728
849	박해근	859,241
850	이창식	96,138
851	권보상	27,209
852	김윤중	125,827
853	김근이	35,897
854	김원기	234,499
855	서성관	50,117
856	김종섭	397,343
857	이문강	152,728
858	박윤규	84,357
859	이대식	378,997
860	김광희	111,381
861	나봉환	1,428,488
862	신영길	186,577
863	윤상철	86,973
864	권영배	-
865	유제호	129,572
867	임윤철	224,605
868	이상도	509,569
869	김갑중	87,101
870	배철화	67,560
871	김웅열	1,098,609
872	김흥태	66,109
873	안간형	50,056
874	김석원	16,003
875	이용복	88,975
876	김승진	402,266
877	김영진	78,150
878	김건숙	194,384
879	김천하	830,390
880	최창일	116,133
881	이용출	9,205
882	김수일	160,171
883	김동찬	75,103
884	장진석	111,609
885	이청기	392,190
886	김정범	101,897
887	김창호	521,709
888	김광하	443,572
890	문성열	245,509
891	김정진	168,277
892	박순균	34,566
893	이은	169,888
894	심용철	299,713
895	서재선	121,536
896	이광희	77,878
	소 계 :	13,051,649

수 번	성 명	금 액
897	서영철	59,812
898	최갑돌	-
899	이윤재	403,843
900	이원배	183,138
901	윤재욱	50,873
902	노순용	72,756
903	정창문	329,154
904	맹숭욱	332,798
905	이강학	49,814
906	김창희	770,883
907	서동이	70,296
908	최상열	67,112
909	김명복	90,802
910	이상현	286,794
911	오영상	65,553
912	임동문	60,589
913	황규태	73,050
915	김종훈	179,085
916	최정주	31,476
917	서경천	1,122,333
918	강흥희	56,384
919	김창국	53,507
920	최장기	-
921	정광철	851,156
922	최경운	64,725
923	박종기	46,615
926	박병옥	212,428
927	손이현	49,796
928	김용택	60,762
929	최창일	410,773
930	이진원	105,839
933	고주봉	50,697
934	서재섭	70,653
935	김종해	50,141
938	공영칠	18,046
939	이동은	95,679
940	김상빈	530
941	허경	108,997
942	황주연	89,578
943	강복원	202,123
944	이은명	434,014
945	김윤수	165,571
947	서윤선	57,017
948	구정섭	644,730
949	송용남	880,949
950	마종현	92,399
952	이평재	69,846
953	손상선	17,597
954	이영천	20,641
955	홍진선	40,039
956	송병구	1,602,523
	소 계 :	10,923,916

수 번	성 명	금 액
957	방성태	-
958	이구철	98,279
959	김성열	-
963	이준석	14,539
964	이훈	573,022
965	정순교	1,111,151
966	변영대	58,866
968	김호생	67,539
970	강근태	32,452
972	황태현	158,057
973	황수용	57,822
974	김석곤	158,326
975	권영민	15,400
976	차점호	1,336,503
977	김동옥	23,367
978	최대용	57,430
979	김재호	2,432
980	황민수	298,350
981	이광운	625,730
982	강우진	408,884
983	김남국	-
984	유동호	-
985	이영준	83,817
986	강두영	58,165
987	이기식	61,205
988	김장수	124,858
989	김동수	214,858
990	지금복	151,974
991	배효영	354,141
992	이승천	12,079
993	장승민	55,755
994	설인수	53,234
995	이재복	-
996	하수명	807
997	김창석	187,817
998	문대봉	22,349
999	김동수	701
1127	오학승	325,176
1177	경영식	2,070,232
	소 계 :	8,875,317

총인원	752
총합계	293,735,398
평 균	390,606

☞ 참고사항
일일이 보고 베낀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총액과 평균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별첨2. 10월분 제15공장(정보기기운용) 근로보상금 내역서

NO	번 호	이 름	현공장	등급(현)	보 상 금	보호감호종료일	수용연수
42	148	방OO		7	24,090	2005.09.23	4년 1개월
54	164	홍OO		6	28,000	2004.12.09	4년 10개월
70	192	김 O		7	22,440	2006.11.17	3년
75	197	한OO		4	48,240	2005.04.24	4년 6개월
96	222	강OO		5	36,670	2007.05.26	2년 5개월
103	238	손OO		7	22,660	2004.12.20	4년 10개월
113	254	구OO		7	22,000	2007.05.08	2년 5개월
115	259	조OO		5	38,380	2006.05.14	3년 5개월
124	272	이OO		7	21,780	2007.06.19	2년 4개월
135	284	배OO		5	37,620	2005.03.27	4년 7개월
164	328	이OO		6	28,560	2005.11.25	3년 11개월
250	461	박OO		5	39,330	2006.03.06	3년 7개월
278	511	이OO		2	77,220	2004.01.04	5년 10개월
286	525	박OO		5	39,520	2006.04.08	3년 6개월
299	547	이OO		6	28,840	2005.04.01	4년 6개월
310	568	박OO		4	49,680	2004.04.10	5년 6개월
414	722	조OO		7	21,010	2006.02.14	3년 8개월
416	724	김OO		5	38,000	2007.03.30	2년 7개월
435	747	천OO		6	28,560	2007.03.30	2년 7개월
445	762	이OO		7	20,020	2007.01.10	2년 9개월
462	787	조OO		6	28,420	2004.03.22	5년 7개월
476	824	박OO		4	48,480	2006.01.12	3년 11개월
487	842	김OO		6	28,140	2006.04.08	3년 6개월
501	865	유OO		6	28,700	2006.11.12	2년 11개월
509	880	최OO		5	37,050	2006.03.22	3년 7개월
515	893	이 O		7	21,670	2005.12.25	3년 10개월
517	896	이OO		6	27,300	2006.07.01	3년 3개월
518	897	서OO		6	27,580	2006.07.17	3년 3개월
519	899	이OO		5	38,760	2005.01.30	4년 9개월
총 29 명				합계	958,720원		
				평균	33,059원		3년 9개월

별첨 3 **자비부담물품 종류 및 가격표**

품 목	회사	공급가격	비고	품 목	회사	공급가격	비고
사발면	빙그레	540		남자스킨	(주)라미	5350	
간 장	동해식품	790		남자로션	〃	〃	
빵	기린	295		여자스킨	〃	〃	
식 빵	〃	550		여자로션	〃	〃	
우 유	빙그레	170		면양말	길성섬유	1100	
사이다	해태음료	620		면도기	명하이텍	13000	
콜라	〃	650		운동화	국제	9360	
쏘세지	대상농장	700		세수비누	무궁화	480	
요구르트	매일유업	41		편지지	대전(교)	220	
마가린	오뚜기	840		편지봉투	〃	200	
사탕	로알제과	630		면수건	〃	1200	
쵸코바	(주)삼아	345		화장지	전주(교)	270	
1200과자	미리식품	730		항소이유서	영등포(교)	290	
두유	연세우유	170		노트	〃	310	
배추김치	도원식품	1180		손목시계	오리엔트	9300	
매실쥬스	(주)맛샘	890		시계줄	〃	1200	
고추장	공주(교)	890		전화카드	K.T	4700	
포카리스웨트	동아	1310		때타올	이태리	154	
500과자	(주)농심	375		면장갑	개풍산업	185	
양파링	(주)농심	450		세탁비누	세주	278	
현미녹차	태평양	1440		수세미	신한물산	308	
참기름	교정협회	1900		위생대	유한	1130	
닭훈제	〃	1850		고무장갑	성물산업	905	
오징어	〃	1000		볼펜심	모나미	82	
땅콩	〃	1000		볼펜	〃	113	
맛김	〃	400		비누곽	플라코	620	
멸치조림	〃	1700		머릿빗	칠성	154	
연성세제	제일제당	1780		테니스공	한일	690	
사각팬티	전방군제	1910		줄수리	국제	6300	
반팔런닝	〃	1330		건전지	교정협회	680	
치솔	크리오	810		사진첩	〃	700	
치약	금호덴탈	690					

별첨4-1

피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2. 7. 1 - 7. 31)

요일별	1일단가	아침 품명	아침 가격	점심 품명	점심 가격	저녁 품명	저녁 가격	비고
일요일	1,039.45	콩나물국 양파절임 김치	101.98 56.38 103.00	생선묵찌개 풋고추된장 김치	159.11 86.48 103.00	새우야채국 고등어조림 김치	135.88 190.62 103.00	
월요일	1,110.40	호박된장국 김치볶음 맛김	108.17 148.01 85.00	참치찌개 마늘고추장무침 겉절이	151.18 165.10 92.09	삐우거지국 풋고추양파무침 김치	199.05 58.80 103.00	환자식 계란1개
화요일	1,242.87	김치찌개 콩조림 깍두기	135.65 87.10 80.00	오이냉국 갈치조림 김치	71.70 199.99 103.00	돈육찌개 오이양배추무침 김치	376.75 85.68 103.00	
수요일	1,146.67	미역국(쇠) 우엉조림 김치	106.36 186.10 103.00	닭개장 미나리무침 김치	230.90 111.90 103.00	감자찌개 실파무침 김치	66.68 135.73 103.00	
목요일	1,338.15	북어국 생선묵감자조림 김치	164.86 119.02 103.00	돼지고기국 깻잎쌈 김치	433.89 156.45 103.00	호박감자국 콩나물무침 무생채	71.31 94.33 92.29	
금요일	1,110.41	들깨무국 양념깻잎 김치	78.12 112.23 103.00	생선매운탕 오이양파무침 김치	214.99 86.67 103.00	된장찌개 야채닭조림 맛김	97.46 229.94 85.00	환자식 계란1개
토요일	1,222.74	김치콩나물국 생선묵볶음 깍두기	158.35 156.84 80.00	계란파국 짜장 단무지	134.67 126.34 60.00	근대국 오징어볶음 겉절이	151.32 263.13 92.09	

§. 동일 식군내 상호 대체 가능
§. 단가 초과 및 미달시는 물량으로 조절가능
§. 조리내역서상의 수량은 조리전의 생체량임
§. 김치, 깍두기, 겉절이, 맛김, 무생채는 상혹대체 가능

국. 찌개류 : 21회
조림,무침,볶음류 : 21회
김치류 : 21회
계 63회

1일1인당 평균액 1,172.35

별첨4-2

피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2. 9.1 - 9. 30)

요일별	1일단가	아침 품명	아침 가격	점심 품명	점심 가격	저녁 품명	저녁 가격	비고
일요일	1,027.84	김치콩나물국 생선묵볶음 깍두기	105.64 154.44 80.00	감지찌개 미역줄기볶음 김치	72.44 75.00 103.00	닭개장 풋고추조림 김치	212.55 121.77 103.00	
월요일	1,044.21	미역국 호박볶음 김치	108.36 88.83 103.00	된장찌개 갈치조림 김치	97.46 204.49 103.00	순두부찌개 야채계란찜 김치	149.63 86.45 103.00	환자식 계란1개
화요일	1,278.27	근대된장국 깻잎순볶음 김치	186.52 133.40 103.00	두부찌개 김/양념장 겉절이	143.82 68.37 92.09	돈육찌개 콩나물무침 깍두기	376.75 94.33 80.00	
수요일	1,167.13	호박감자국 오징어무침 김치	79.95 221.34 103.00	짬뽕국 단무지무침 김치	143.30 93.79 103.00	김치찌개 갈치조림 깍두기	138.28 204.49 80.00	
목요일	1,400.68	북어국 감자조림 김치	161.26 118.91 103.00	돼지고기국 깐마늘절임 겉절이	433.89 133.92 92.09	닭미역국 콩나물무침 깍두기	183.29 94.33 80.00	
금요일	1,120.21	호박찌개 콩조림 김치	142.25 84.70 103.00	생선묵찌개 야채샐러드 김치	159.11 139.09 103.00	무된장국 야채닭조림 김치	74.12 211.94 103.00	환자식 계란1개
토요일	1,053.16	양배추국 멸치양파조림 김치	79.18 106.25 103.00	청국장찌개 마늘고추장 겉절이	119.07 148.95 92.09	감자탕 오잉부추무침 김치	190.52 111.11 103.00	

§. 동일 식군내 상호 대체 가능
§. 단가 초과 및 미달시는 물량으로 조절가능
§. 조리내역서상의 수량은 조리전의 생체량임
§. 김치, 깍두기, 맛김, 무생채는 상호대체 가능

국,찌개류 21회
조림, 무침, 볶음류 21회
김 치 류 21회
계 63회

1일1인당 평균액 1,147.93

별첨4-3

피감호자 부식물 차림표

(2002. 10. 1 - 10. 31)

요일별	1일단가	아침 품명	아침 가격	점심 품명	점심 가격	저녁 품명	저녁 가격	비고
일요일	1,176.33	시금치된장국 양파절임 김치	112.90 57.22 93.00	돈육찌개 마늘고추장 겉절이	374.48 18.00 89.94	홍합국 오이양배추무침 깍두기	117.71 108.48 80.00	
월요일	1,172.37	들깨무국 생선묵감자조림 김치	64.82 113.72 93.00	동태찌개 무도라지무침 김치	240.24 125.69 93.00	미역국 야채닭조림 김치	128.16 220.78 93.00	환자식 두유1개
화요일	1,039.45	북어국 두부조림 김치	167.41 109.72 93.00	감자찌개 잡채 김치	83.92 144.48 93.00	김치찌개 콩나물무침 겉절이	130.42 97.16 99.34	
수요일	1,178.62	콩나물국 김치볶음 로 햇채우육 량	98.25 138.47 85.00 량	호박찌개 갈치조림 깍두기 량	166.78 194.89 80.00 량	감자탕 오이양파무침 김치	201.61 120.62 93.00	
목요일	1,300.54	생선묵국 콩조림 김치	126.57 84.70 90.00	돼지고기국 멸치젓무침 겉절이	429.54 105.16 99.34	순두부찌개 멸치양파조림 김치	156.22 113.01 93.00	
금요일	1,094.35	된장찌개 감자조림 김치	114.99 142.10 93.00	양배추국 시금치무침 김치	80.33 112.95 93.00	콩나물국 오징어볶음 김치	98.25 266.73 93.00	환자식 두유1개
토요일	1,266.36	청국장찌개 오징어젓무침 김치	124.09 213.08 93.00	참치찌개 야채샐러드 김치	141.41 200.25 93.00	감자탕 콩나물무침 깍두기	191.37 97.16 80.00	

§. 동일 식군내 대체 가능
§. 단가 초과 및 미달시는 물량으로 조절가능
§. 조리내역서상의 수량은 조리전의 생채량임
§. 김치, 깍두기, 겉절이, 맛김, 무생채는 상호대체가능

국, 찌개류	21회
조림, 무침, 볶음류	21회
김치류	21회
계 :	63회

1일1인당 평균액 1,171.78

별첨5. 자비부담 의약품 허가품목 내역서(2002년도)

순번	품 명	제약회사	규 격	허가량	단 가	적 용 증
1	가그린	동아제약	250ml	1	1,580	구강청결제
2	게브랄티	유한양행	100정	1	12,240	영양제
3	겔포스 엠	보령제약	20포	1	13,020	위 십이지궤양
4	구심	보령제약	45환	1	5,590	심장질환
5	기넥신 F	SK제약	50캅셀	1	12,320	혈액순환개선제
6	기가훌빈연고	상아제약	15g	2	3,040	무좀
7	거풍지보환단	보람제약	개	5	250	고혈압
8	그랑페롤	유한양행	60C	1	8,320	영양제
9	나리스타	삼천당	12ml	2	1,580	비염
10	노루모	일양약품	12포	5	1,580	위산과다
11	니조랄 액	한국얀센	60ml	1	6,500	비듬제거제
12	대일밴드	대일화학	10매	5	220	열상완화
13	더모베이트액	그락소	25ml	2	2,880	피부질환
14	더모베이트 연고	그락소	10g	2	1,070	피부질환
15	데놀	녹우제약	120정	1	30,400	위십이지장
16	덴티놀	영일약품	50캅셀	2	4,980	잇몸질환
17	도미나 크림	태극약품	10g	3	2,190	기미
18	도브비누	존슨앤존슨	100g	3	1,580	피부세정제
19	듀스파타린	중외제약	100정	1	12,450	급만성대장염
20	두리방	초당약품	150캅셀	1	19,920	혈액순환개선제
21	라미실크림	노바티스	15g	2	10,750	피부질환
22	락테올	동화약품	100캅셀	1	15,620	급만성대장염
23	레모나	경남제약	20포	5	3,310	영양제
24	롤프룩스	한독약품	3g	1	21,850	손발톱 무좀
25	리박신	대화제약	50g	1	2,260	소염진통제
26	릎 플러스	상아제약	3.5g	2	1,750	입술보호제
27	마이덤	유유산업	15g	2	1,280	무좀연고
28	모나신 발모고	삼공제약	20g	2	2,970	발모촉진제
29	물파스	현대약품	45ml	2	680	타박상
30	물팝로션	현대약품	100ml	2	1,580	소염진통제
31	미놀트로키	경남제약	24정	3	3,410	인후염 기관지염
32	메모비스	영일약품	60캅셀	1	9,830	시력저하 예방제
33	멘소레담로션	보령제약	100ml	1	3,320	소염 진통제
34	반질연고	삼공제약	60g	2	3,590	주부습진
35	베이비로션	존슨앤존슨	200ml	2	4,810	피부보습
36	베이비오일	존슨앤존슨	200ml	2	4,810	피부보습
37	베이비파우다	존슨앤존슨	100g	1	2,580	피부보습
38	마데카솔	동국제약	10g	2	3,980	외상
39	엘씨 500	구주제약	50캅셀	1	10,310	영양제
40	비나폴로	유유산업	50캅셀	1	12,230	영양제
41	삐콤 C	유한양행	100정	1	12,670	영양제
42	세레스톤지	유한양행	15g	2	3,060	피부질환
43	센스타임	일동제약	750ml	1	7,870	구강청결제
44	솔박타	근화제약	160ml	1	4,230	청결제
45	솔린액오랄	한국파마	90ml	1	2,790	장세척
46	스맥타	대웅제약	30포	1	11,080	대장염
47	시메티딘	국제약품	100정	1	2,620	위십이지장
48	시워나	삼공제약	25ml	1	2,060	비염
49	시린메드	부광약품	90g	3	1,580	치아질환

순번	품 명	제약회사	규 격	허가량	단 가	적 용 증
50	신도톱	국제약품	15ml	1	1,560	결막염
51	신신파스	신신제약	5매	5	760	소염진통제
52	써큐란	동화약품	120정	1	17,470	혈액순환개선제
53	산크밍	구주제약	15ml	1	1,570	안질환
54	썰간좌약	환인제약	10개	1	4,890	치질
55	썰간연고	환인제약	30g	1	4,890	치질
56	아락실	부광약품	8g/20포	1	8,720	변비
57	아로나민골드	일동제약	60정	1	8,740	영양제
58	안신환	익수제약	1환	5	960	심신안정제
59	알마겔	유한양행	20포	1	3,050	위십이지장
60	오제나	한림제약	100정	1	8,200	비염
61	용각산	보령제약	25g	2	2,630	기관지
62	우루사	대웅제약	60캅셀	1	15,290	간기능개선제
63	원방 우황청심원	한보제약	1환	5	4,810	뇌졸증 협심증
64	유니코트	대신약품	30g	1	2,000	피부질환
65	유락신연고	상아제약	50g	1	1,390	옴 가려움증
66	유판씨	유유산업	20포	5	2,800	영양제
67	인사돌	동국제약	100정	1	26,220	잇몸질환
68	잔탁	그락소	60정	1	31,980	위십이지장
69	정로환	동성제약	48정	2	1,660	설사
70	제놀파스 쿨	상아제약	5매	5	1,580	소염진통제
71	제놀파스 핫	상아제약	6매	5	1,580	소염진통제
72	제놀스틱	상아제약	40g	1	1,750	소염진통제
73	젤콤	종근당	1정	2	660	구충제
74	카네스텐	바이엘	30g	2	4,370	무좀
75	카미졸크림	삼천리	20g	2	1,380	무좀 피부질환
76	캄비숀 연고	한독약품	20g	2	2,530	피부질환
77	케노펜겔	일동제약	50g	1	3,490	소염진통제
78	케토톱	태평양	6매	5	2,360	관절염
79	타이레놀	한국얀센	10T	3	1,050	두통, 진통제
80	토비콤	안국약품	60캅셀	1	5,160	시력저하 예방제
81	트라스트 패취	SK제약	3매	5	3,050	관절염
82	티눈밴드	신신제약	8매	1	1,660	티눈제거
83	파로돈탁스	부광약품	100g	3	8,740	잇몸질환
84	푸레파라손 연고	일동제약	28g	2	4,800	치질
85	푸레파라손 좌약	일동제약	12개	2	7,160	치질
86	푸르나졸	대우약품	30캅셀	1	83,010	손발톱 무좀
87	피엠졸	경남제약	30ml	1	4,660	무좀치료제
88	헬스칼	동화약품	72정	1	12,150	칼슘보충제
89	혜모골드	안국약품	40정	1	6,550	빈혈
90	후시딘	동화약품	10g	2	3,140	피부질환
91	후릭소나제	그락소	120회분	2	11,610	소염진통제
92	훼스탈프러스	한독약품	10캅셀	5	1,930	소화제
93	홍삼분	인삼공사	100캅셀	1	9,180	홍삼분말제
94	한방파스	제일약품	6매	5	2,430	소염진통제
95	베로텍	한국베링거	15ml	2	4,270	기관지 천식
96	펜잘	종근당	10T	3	1,310	진통제
97	쑥찜팩	부광약품	10포	2	12,590	관절염
98	은단	고려은단	1통	3	1,940	구강청결제
99	버물리	현대약품	50ml	2	1,950	벌레물린데
100	화이투벤	한일약품	12T	3	1,580	감기약

피보호감호자 영치금 예탁금 총액(2002. 11. 현재)

1	246	561	817
2	127	562	135,789
3	469	563	40,680
4	659,387	564	160,124
5	777,449	565	62,287
6	34,325	566	170,076
7	6,564	567	590,074
8	15,178	568	13,963
9	437,185	569	574,858
10	248,299	570	872,841
11	129,187	571	68,249
13	71,367	572	31,249
14	428,661	574	234,749
15	3,639	575	633
16	921,013	576	217,393
18	85,461	577	511,887
19	268,500	578	700,039
20	107,652	584	81,694
21	327,449	585	23,939
23	639,014	587	302,749
24	233,735	591	3,997
25	233,911	592	3,773
26	3,319	593	17,213
27	350,532	594	10,019
28	245,896	595	3,213
29	160,101	596	2,792
30	33,944	597	1,119,526
31	364,396	599	738
32	27,899	544	947
33	63,296	545	88,704
34	252,796	546	666
35	947,240	548	49
36	5,715	549	24,995
37	115,643	550	817
38	8,938	551	31,561
39	80,517	552	435,817
40	27,416	553	6,911
41	9,409	554	50,920
42	826,381	555	254,305
43	206,419	556	143,247
101	499,578	557	61,669
102	15,630	558	168,712
103	273,074	559	20,810
104	228,809	561	817
106	2,633	562	135,789
107	231,825	563	40,680
108	4,160	564	160,124
109	18,945	565	62,287
110	66,355	566	170,076
111	503,810	567	590,074

112	1,226
113	328,243
114	151,210
115	1,014
116	76,589
117	108,106
118	161,979
119	14,389
120	24,058
121	482,991
122	13,435
123	632,335
124	245,470
125	1,031
126	30,941
127	114
128	421,164
129	248,399
130	644
131	85,261
132	2,354
133	76,697
134	5,128
135	229,010
136	26,231
137	5,781
138	544
139	328,004
140	205
141	374,523
142	5,205
143	100,010
144	358
145	289
146	24,880
147	37,025
148	13,214
149	51,608
150	8,390
151	1,748
152	671,551
153	180,541
154	47,734
155	32,435
156	16,356
157	825,319
158	26,077
159	203,500
160	11,371
161	417
162	6,421
568	13,963
569	574,858
570	872,841
571	68,249
572	31,249
574	234,749
575	633
576	217,393
577	511,887
578	700,039
584	81,694
585	23,939
587	302,749
591	3,997
592	3,773
593	17,213
594	10,019
595	3,213
596	2,792
597	1,119,526
599	738
601	300,650
602	824,167
603	605
604	461,542
605	176,457
606	9,114
607	420,230
608	415,768
609	1,677
611	141,590
612	67,682
613	1,097
614	224,493
615	1,395
617	75,847
618	19,579
619	10,353
620	12,290
621	328,778
622	205,860
624	72,136
625	365,225
626	7,314
627	81,368
628	100,173
630	5,326
631	15,143
632	110,750
633	10,119
634	5,366
163	48,981
164	245,786
165	57,917
166	335,005
167	296,537
168	329,260
169	2,369
170	57,716
171	33,405
172	1,186
173	261,821
174	435
175	260,954
176	1,524
177	530,510
181	260,954
182	1,524
183	530,510
184	100,200
185	497
186	89,868
187	230,945
188	86,689
189	40,591
190	601
191	823,589
192	157,581
193	51,076
195	67,731
196	436,133
197	361,943
198	1,327
199	718,794
200	72,652
201	114,128
202	905,881
203	7,484
204	352,356
205	88
206	67,065
207	220,492
208	484,033
209	882,848
210	724,325
211	7,025
212	52,018
213	694,461
214	696,034
216	172,712
217	447,609
218	220,932
636	1,442
637	108,481
638	441,479
640	1,008
641	3,080
644	497,310
645	41,145
647	15,869
649	301,240
650	2,054
651	115,770
654	82,896
655	1,563
659	8,160
660	16,849
661	6,517
662	3,675
663	170,099
664	1,418,938
666	44,806
667	245,290
668	238,230
670	660,086
671	246,720
672	334,671
674	5,192
676	42,374
677	740,108
678	492,454
679	289,937
680	766,970
681	53,186
683	29,163
684	6,825
685	100,551
686	142,431
687	122,290
688	3,624
689	189
690	104,036
691	721,374
692	776
693	18,570
695	710
696	455,074
698	113,881
699	648,501
700	89,073
702	91,227
704	306,436
705	50,836

219	281,102
220	2,909
221	585,984
222	618,930
223	86,983
224	96,031
225	492
226	223,775
227	7,246
228	478,949
229	487
230	3,075
231	82,389
232	311,795
233	18,561
234	455,646
235	276
236	385,759
239	385,759
242	207,676
243	706
245	813,669
246	163,818
247	656,750
249	1,319
250	152,263
251	806
253	26,708
254	133,449
257	816,994
259	231,309
260	215,479
261	1,267
262	76,188
263	16,578
267	2,131
268	75,392
269	30,908
270	3,906
271	30,170
272	54,368
273	131,142
274	795,753
276	45,840
277	67,971
278	1,301
279	88,123
280	51,909
281	13,649
283	536,111
284	421,653
707	3,547
708	362,506
709	421,441
710	220,171
711	5,398
712	68,771
713	41,141
714	16,037
716	16,889
717	7,960
718	454,326
719	63,455
720	253,397
721	5,075
722	121,057
723	491,286
724	197,923
725	116,376
726	3,004
727	66,145
728	7,851
729	173,207
730	10,160
731	289,249
732	321,405
733	1,313
734	609,219
736	63,664
737	11,202
738	78,109
739	986,253
741	587,335
742	6,362
743	293,180
744	722,336
745	277
746	36,417
747	51,274
748	85,171
749	259,970
750	194,067
752	902
753	442,340
754	207,978
755	81,311
756	176,983
757	6,190
758	486,920
762	498,210
763	275,581
764	22,960
765	609,654
767	35,634
768	10,448
769	97,515
770	488,891
771	234
772	2,268,245
774	155,361
779	455,466
780	277,954
781	4,160
783	27,735
785	120,893
786	248,023
787	165,373
789	176,763
790	52,059
791	54,362
792	305,342
794	143,812
795	30,869
796	1,047,307
807	4,262
808	15,653
809	596
810	385,918
811	11,757
813	12,185
814	281,984
815	374,093
816	127,018
817	31,821
818	860,984
819	87,155
820	5,514
821	5,806
822	1,212
823	251,996
824	1,986
825	1,023
826	142,451
827	4,116
828	84,287
829	12,814
830	7,186
831	1,337,347
832	79,708
834	383
835	56,843
836	437,081
837	2,092
285	7,635
286	829,422
287	1,138,220
288	–
289	399,308
290	947
291	560,695
292	930,397
293	1,161,858
294	1,012,779
295	602
297	7,120
299	744,019
302	50
303	62,269
304	318,258
305	8,360
306	737,277
308	14,787
310	270,491
312	555,065
313	–
314	1,389,690
315	424,652
316	25,961
318	451,735
319	32,397
320	583,978
321	80,661
324	728,672
325	157,403
326	361,455
328	1,011,632
330	3,023
333	167,345
335	319,983
336	15,723
337	101,956
338	5,285
339	105,986
341	33,618
342	495,232
343	474,791
344	473,212
345	291,205
346	464,405
347	179,398
348	407,689
349	1,694
350	24,482
351	118,964

352	7,330
353	10,545
354	566,218
357	339,271
359	23,658
360	1,047
361	117,835
362	1,109,615
363	245
364	1,040
365	1,030
367	281,090
369	63,778
371	137,119
373	204,842
374	31,686
375	23,126
377	1,246,709
378	17,886
380	3,189
381	572,872
382	434
383	252,533
384	403,173
385	20,277
386	204,621
387	269,023
388	11,207
391	164,737
393	6,802
394	489,536
396	41,434
397	321,173
398	26,165
399	4,037
400	15,426
401	1,462
405	274,923
406	1,358,928
411	61,957
412	22,979
413	5,267
415	11,180
416	52,160
417	59,213
418	94,831
419	713,785
420	57,560
422	156,397
423	7,169
426	260
838	396,879
839	429,638
840	327,836
841	786,864
842	1,134,747
843	264,430
844	3,472
846	79,299
847	225,645
848	118,507
849	36,620
850	1,160
851	127,733
852	31,341
853	2,276
854	3,278
855	89,668
856	19,148
857	96,292
858	2,613
860	849,154
861	517
862	42,433
863	133
864	222,767
865	169,344
867	42,811
868	14,693
869	41,167
870	255
871	2,112
872	10,968
873	59,336
874	1,544
875	12,315
876	208,345
877	2,215
878	735,118
879	1,460
880	177,103
881	3,222
882	458,839
883	50,482
884	3,802
885	129,856
886	58,269
887	7,095
888	5,200
890	148
891	188,918
892	155,019
427	641,175
428	3,225
430	16,462
431	205,469
432	966,480
435	688,543
437	25,048
438	83,617
439	2,424
442	251,553
445	662,937
447	1,049,702
448	10,101
449	16,927
450	174,267
452	326,666
454	34,505
456	715
458	432
459	5,617
460	24,517
461	193,946
462	76,603
463	457,174
465	1,681
466	13,703
467	276,008
468	263,112
469	204,323
470	542,106
472	445,035
473	1,438,527
474	182,166
478	105,500
479	453,629
480	405
481	711
482	308
483	153,600
484	100,871
485	2,842
486	81,900
487	5,631
489	140,399
490	1,145
491	831,773
492	2,654
493	106,941
494	599,993
495	30,284
496	32,709
893	127,305
894	698,186
895	25,250
896	251,347
897	20,017
898	452,084
899	474,804
900	661,684
901	199,207
902	63,103
903	248
904	10,379
905	74,851
906	412,532
907	2,763
908	63,533
909	8,956
910	83,766
911	91,338
912	620
913	172,260
915	31,015
916	11,217
917	318
918	540,274
919	333,105
920	505
921	388,999
922	115,687
923	3,447
926	148,430
927	32,075
928	15,399
929	261,579
930	88,090
933	11,355
934	12,237
935	114,425
938	234,798
939	557,441
940	44,134
941	95
942	259,156
943	1,535
944	35,287
945	1,656
947	23,852
948	48,845
949	110,001
950	4,251
952	300,614

497	1,084,089
498	95,084
499	209,885
500	483
501	30,680
502	622,461
503	495,101
504	5,907
505	344,093
506	55,487
507	771,384
508	2,080
509	234,562
510	20,220
511	1,845
512	191,273
513	8,761
514	140,587
515	1,484
516	360,057
517	78,778
518	213,786
519	734,760
520	66,006
522	49,592
523	595,050
524	151,694
525	123,068
526	959
527	788
528	10,439
529	338,719
530	742,658
531	87,054
533	20,058
534	43,551
535	296,106
536	118,535
537	86,369
538	80,005
539	19,492
540	6,060
541	2,924
542	12,287
543	8,935
544	947
545	88,704
546	666
548	49
549	24,995
550	817
551	31,561
552	435,817
553	6,911
554	50,920
555	254,305
556	143,247
557	61,669
558	168,712
559	20,810

953	109,053
954	172,096
955	735
956	32,598
957	18,421
958	343,332
959	91,956
963	1,665
964	4,222
965	36
966	98,348
968	729
969	–
970	456
971	–
972	862,852
973	425
974	316,604
975	84,394
976	313,477
977	1,171
978	45,864
979	9,837
980	571
981	35,494
985	552,556
986	164,084
987	5,860
988	607,380
989	213,113
990	2,020
991	572
992	566,443
993	97,728
994	182,735
995	76,282
996	87,991
997	141
998	27,797
999	2,685
1016	–
1023	–
1108	–
1127	8,053
1129	–
1133	–
1149	–
1154	–
1177	193,492
1195	–
1220	–
1261	–
1277	–
1301	–
1303	–
1307	–
1315	–
1319	–
1337	–

총계 : 159,522,720

☞ 참고사항
일일이 보고 베낀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총액과 평균에는오차가 없습니다.

별첨6-1 제16공장 근로보상금 내역 (2000년 10월)

번 호	이 름	등 급	근로보상금	번 호	이 름	등 급	근로보상금
105	목영신	6	28,850	601	한상철	5	34,200
121	김용호	5	70,870	604	박관용	5	11,400
132	강호영	5	19,000	626	이상호	5	19,000
149	정성만	6	18,900	627	임영수	5	18,050
159	배근호	6	16,100	641	엄길용	3	68,200
162	장인영	5	70,300	647	서호원	5	54,720
172	이재춘	4	56,400	658	김수봉	3	68,200
186	김영인	1	158,400	659	송영철	4	48,000
201	장기석	4	79,200	680	박종준	3	100,130
202	구정태	5	47,500	681	신영길	6	18,450
205	소태연	4	79,200	683	김경삼	7	8,800
209	김태주	6	16,100	688	박헌영	6	30,950
214	이인성	4	52,800	698	정환관	5	68,970
235	박기성	4	28,800	726	김삼도	3	102,300
267	강봉식	3	97,030	742	김정섭	4	70,320
280	임광영	1	158,400	754	오기곤	6	32,200
293	이정환	5	28,500	755	김우영	5	28,500
316	전호찬	6	11,900	763	김주면	7	11,000
342	함영하	2	104,480	796	채성모	7	16,500
361	김응석	7	12,100	813	박종호	1	88,800
371	백정민	5	22,800	843	신 철	5	62,700
377	장석철	3	41,800	861	나봉환	3	102,300
400	윤명회	2	85,800	922	최경운	6	46,200
422	손천수	1	158,400	926	박병욱	6	21,000
423	신동순	2	122,070	935	김종해	6	14,750
445	조규석	6	6,300	952	이평재	7	14,300
489	지칠봉	1	158,400	954	이영천	7	14,850
522	김명환	3	102,300	958	이구철	6	18,200
529	김일수	2	121,250	990	지금복	4	48,000
558	박흥수	6	30,800	995	이재복	7	17,600
575	유재돌	2	112,320	총인원	69명	합계	3,423,160
596	이대영	5	47,500	1인당 평균금액			55,212

★ 등급별 인원현황	
1등급	5명
2등급	5명
3등급	8명
4등급	8명
5등급	15명
6등급	14명
7등급	7명

☞ 참고사항
일일이 보고 베낀 것이므로 개인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합계나 평균금액에는 오차가 없음.

별첨6-2 제16공장 근로보상금 내역 (2002년 11월)

번 호	이 름	등 급	근로보상금	번 호	이 름	등 급	근로보상금
121	김용호	5	80,000	626	이상호	5	19,000
132	강호영	5	28,500	627	임영수	5	22,800
149	정성만	6	14,000	641	엄길용	3	82,950
159	배근호	6	14,000	659	송영철	4	48,000
162	장인영	5	71,250	680	박종준	3	95,480
172	이재춘	4	67,200	681	신영길	6	16,100
186	김영인	1	162,240	683	김경삼	7	11,000
201	장기석	4	81,120	688	박헌영	6	21,000
202	구정태	5	47,500	698	정환관	5	77,320
205	소태연	4	81,120	726	김삼도	3	124,620
209	김태주	6	14,000	742	김정섭	4	61,920
214	이인성	4	81,120	754	오기곤	6	15,400
235	박기성	4	22,800	755	김우영	5	47,500
267	강봉식	3	104,780	763	김주면	7	11,000
280	임광영	1	159,840	796	채성모	7	16,500
293	이정환	5	22,420	813	박종호	1	132,000
316	전호찬	6	26,320	818	정문학	5	43,700
342	함영하	2	128,700	829	문동훈	5	49,400
352	김대근	7	14,300	843	신 철	5	54,150
361	김응석	7	128,700	855	서성관	7	11,000
371	백정민	5	20,900	861	나봉환	3	124,620
400	윤명회	2	877,500	922	최경운	6	47,320
422	손천수	1	162,240	926	박병욱	6	23,800
423	신동순	2	122,070	935	김종해	6	14,000
489	지칠봉	1	162,240	952	이평재	7	19,950
522	김명환	3	104,780	954	이영천	7	12,650
529	김일수	2	131,820	955	홍진선	7	11,000
558	박흥수	6	39,150	958	이구철	6	28,700
575	유재돌	2	142,770	987	이기식	4	48,000
596	이대영	5	68,840	989	김동수	6	17,500
601	한상철	5	23,370	990	지금복	4	44,400
604	박관용	5	11,400	995	이재복	7	21,450
				총인원	69명	합계	3,744,000
				1인당 평균금액			56,727

★ 등급별 인원현황	
1등급	5명
2등급	5명
3등급	8명
4등급	8명
5등급	15명
6등급	14명
7등급	7명

☞ 참고사항
일일이 보고 베낀 것이므로 개인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합계나 평균에는 오차가 없음.

※ 일과지 작성법

시간과정란의 공전란에 운동, 접견 등의 공제항목을 기재한 후 능률란에 공제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재한 다음 뒷면의 증감기준표의 실근로시간을 계산율로 환산하여 일과지에 기재합니다.

공제항목 기재시 각 항목의 공제시간을 기록하여 -예)운동 30분 - 1주일 단위로 중간계산을 하고 말일에 총계를 냅니다.

공제시간	실근로시간	계산율		증액실근로시간	계산율
30분	7시간30분	0.95		8시간30분이상	1.1
1시간	7시간	0.9		9시간이상	1.2
1시간30분	6시간30분	0.85		10시간이상	1.4
2시간	6시간	0.8		11시간이상	1.6
2시간30분	5시간30분	0.75		12시간이상	1.8
3시간	5시간	0.7		13시간이상	2
3시간30분	4시간30분	0.65			
4시간	4시간	0.6			
4시간30분	3시간30분	0.55			
5시간	3시간	0.5			
5시간30분	2시간30분	0.45			
6시간	2시간	0.4			
6시간30분	1시간30분	0.35			
7시간	1시간	0.1			

결재	과장	계	근 로 일 과 표 2003년 1 월분 근 무 자 (인)									
제	내청	공장	작업명 : 내부청소			작업등급: 4			칭호번호 : 1234		성명: 홍길동	
일자	시간과정		수량과정		(인)	일자	시간과정		수량과정		(인)	
	능률	공전	능률	공전			능률	공전	능률	공전		
1	8:00		1			22	7:30	목욕	0.95		도장	
2	8:00		1			23	7:30	집회	0.95		〃	
3	8:00		1			24	7:30	접견	0.95		〃	
4	4:00	대전방	신출역자는 대전방	이후부터 일과지 작성	도장	25	4:00	전화	0.6		〃	
5	8:00		입소,휴입은	출역대한해 달것	〃	26	8:00	운동	1		〃	
6	8:00		소계:			27	5:00		소계:			
7	7:30	목욕	0.95		도장	28	7:30	목욕	0.95		도장	
8	7:30	집회	0.95		〃	29	7:30	집회	0.95		〃	
9	7:30	접견	0.95		〃	30	7:30	접견	0.95		〃	
10	7:30	전화	0.95		〃	31	0	전화	소계:	총계:	〃	
11	4:00		0.6		〃	월	기본과정		가감과정	실능률	공 전	
12	8:00	운동	1		〃		시간	수량	가 감		단 가	금 액
13	5:00		소계:			계					2,400	
14	3:00	외부병원	0.5		도장	구분	요 소		채점기준		채점 수 우 미 양 가	
15	7:30	전화	0.95		〃	근로점수성적	근로성적 (1점)		책임량달성		1.0 1.0 0.8 0.7 0.6 0.5	
16	5:00	가입병	0.5		〃		근면여부 (2점)		근로취업 및 열중도		1.0 1.0 0.8 0.7 0.6 0.5	
									재료 및 장비취급		1.0 1.0 0.8 0.7 0.6 0.5	
17	4:00	퇴병	0.6		〃				총 점	3.0	도장	
18	4:00	청원심사	0.6		〃							
19	8:00		1		〃							
20	8:00		소계:			근로성적등급			수 : 3점, 우:2.4-2.9점, 미: 2.0-2.3점 양 : 1.5-1.9점, 가: 1.5-1.6점			
21	6:30	집회	0.85		도장							

1급:5,800 2급:4,700 3급:3,800 4급:2,900 5급:2,300 6급:1,700 7급:1,400

운동,접견, 전화,목욕,의무연출,: 각 30분씩 공제 | 불교,천주교,기독교 집회: 각 1시간 30분씩 공제

외부병원, 청원심사, 등은 제외되는 실시간등 공제 | 조사, 가입병등은 작업장에서 제외되는 실시간에의해 공제

No.

월별	근로보상금	날짜	사용내역	근로보상금	
이월	115.569	1/7	신문	9.000	*12.14 약품 5.000원
1	39.710	3/18	일용품	715	
2	34.010	4/12	약품	7.050	
3	40.660	15	일용품	7.975	
4	39.710	26	약품	17.390	
5	37.620	5/3	신문	9.000	
6	34.180	10	외부병원진료비	57.810	
7	40.470	13	일용품	4.700	
8	42.180	21	약품	8.140	
9	37.620	6/17	일용품	1.500	
10	38.380	7/10	우표	9.400	
11	39.520	15	약품	7.870	
12	38.190	29	신문	10.000	
	578.219	8/26	일용품	5.350	
금년	462.650	10/8	약품	4.810	
월평균	38.554	10	외부병원진료비	50.000	금년중 462.650원 벌
		28	도서	9.000	이사 신문·일용품·약품·진료비
		29	신문	10.000	로 229.660, 기타 154.210
			계	229.660	합계 383.870원을 사용하고
					78780원 저축

No.

날짜	구분	영치금	
11/7	오류입금	67.324	5.10 외부병원진료비 100.000
24	우송	100.000	22 〃 81.380
12/24	차입	50.000	6.7 안지래 145.000
1/29	우송	200.000	25 진료비 341.630
2/14	〃	100.000	₩668.010
5/2	차입	100.000	
〃	우송	200.000	
29	〃	400.000	
6/7	차입	40.000	
19	우송	200.000	
8/5	차입	100.000	
10/8	〃	12.500	
30	〃	100.000	
11/28	우송	200.000	
12/20	차입	41.610	
30	〃	50.000	
	합계	1.918.434	殘 165.179.

2003년

님께

입춘이 지났고, 날이 조금 따뜻해지기는 한 듯 하지만 아직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시기인데 감호소안은 더 추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송에서의 몇차례 단식과 언론에서의 보도가 있은 후 십 여통의 편지들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지긴 했지만 죄송스런 마음이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호법 비인권적인 악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이 형벌이 아닌 것 같이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한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처벌임이 명백합니다. 법무부에서 지난해 11월 근로보상금의 20%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역시 턱없이 낮은 액수이고, 가출소의 완화라는 것도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보호감호제의 폐지나 사회보호법의 구체적 변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지난해 11월 저희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해결방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송감호소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사회보호법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타 인권 단체들과 힘을 모아 법 개정운동은 물론, 피감호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장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깝지만 지켜 봐 주시면 저희들의 역량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2003년 2월
천주교인권위원회 드림

청송답변.hwp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03-03-10-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날 짜 : 2003년 3월 10일

문 의 :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016-706-8105

지난 2002년 청송감호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단식 농성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회보호법의 폐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인권침해 피해자인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에 대해 무관심했음을 반성하며,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힘과 지혜로 사회보호법폐지를 이루어 내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보호법의 위헌성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기자회견 직후 진행 할 예정이며, 현 정부에게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 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 :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및 헌법소원
일시 : 2003년 3월 11일 (화) 이른 11시
장소 : 철학마당 느티나무

<식순> 여는 말
경과보고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
헌법소원 경과보고
청송감호소 출소자의 증언
기자회견문 낭독

* 고문 류현석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고영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 자문위원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김동한 성공회대 교수(헌법학)

*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용수 (한양대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 참여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원불교 인권우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11일 현재 총 16개 민간단체)

'문명국가의 수치'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 자/ 회/ 견

<식순>
사회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식순 : 여는 말
경과보고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
헌법소원 경과보고
청송감호소 출소자의 증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 응답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이동

<첨부자료>
공대위 경과보고
헌법소원 경과보고
공대위 구성 및 활동계획 보고
청송감호자의 호소문
기자회견문

여는 때: 2003년 3월 11일(화) 오전 11시
여는 곳: 참여연대 느티나무 까페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경과보고

1. 2002년 4, 10월
청송감호소내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폐지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진행.

2. 2002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3. 2003년 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회가 보호감호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청송감호소를 방문, 피보호감호자를 면담.

4. 2003년 2월 11일
사회보호법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소송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세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공유하고 사회보호법의 문제를 널리 인식시키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에 간담회 제안하기로 합의함.

5. 2003년 2월 2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9개 인권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 폐지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새사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참관) 등 참여
- 이 자리에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가 위헌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호감호제를 폐지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음.
-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 참여연대, 등 5개 단체가 제안단체가 되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인권시민단체에 제안하기로 결정함

6. 2003년 3월 5일
실효성 있는 연대기구의 설립 및 연대기구의 활동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연대기구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오는 11일 발족하기로 결의함

7. 2003년 3월 11일
22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함

공대위 구성 및 활동계획

<구성>

*** 참여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앰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11일 현재 총 22개 민간단체)

*** 고문**

고은 시인, 고영구 변호사, 유현석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 공동대표**

최영도 변호사(참여연대) 김용수 (한양대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자문위원회**

박찬운 변호사, 김동한 교수, 김형태 변호사, 청송 출소자 1인

*** 공동사무국**

인권운동사랑방(유해정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김덕진 02-777-0430)

<목표 및 활동계획>

1. 사회보호법이 비인도적이며 반인권적 악법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거리 캠페인, 서명운동, 국민 대 토론회 등)

1. 청송감호소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외국 사례의 연구 등 사회보호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피보호감호자 백서발간, 출소자 증언대회 등)

1.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해 국내외 제 양심적, 진보적 세력과 연대한다

1.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간다

1.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위해 법적인 제 수단을 강구한다(헌법소원, 재심 청구 등)

헌법소원 내용 및 경과 보고

1. 헌법소원 청구 내용

가. 헌법소원 대상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보호감호 판단여부를 형의 집행 이후 보호감호 집행 개시 당시에 하여야 함에도 형의 선고 시점에서 하여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등 그 자체가 위헌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호감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1. 4.1. 선고 89헌마17, 85, 1 결정).

2002년 세 차례에 걸친 집단 단식 농성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그 안에서의 처우는 형을 집행하는 교도소 내에서의 처우와 전혀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 이하의 수준이고, 보호감호 제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루어지는 처우 그 자체를 정면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호자들을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하여 등급에 따라 처우하도록 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①청송 제1보호감호소에는 신입감호자와 감호자처우등급 다급·라급 및 마급 자를,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는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 자를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용인원의 조절 또는 기타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처우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처우등급에 따른 수용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여자감호자는 제2감호소의 여자 수용실에 격리 수용한다)와 근로보상금을 1일 1,400원 내지 5,800원 지급하는 처분, 그리고 감호자들의 서신을 검열하는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

나. 헌법소원의 내용

가.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보호감호처분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해서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보호감호처분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보호감호처분이 오로지 범죄인을 두 번 가두어 두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헌법재

판소의 다수 논리에 의해서도 그러한 집행은 위헌이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루어지는 보호감호 집행방법은 수용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서 적절치 않고 목적 위반으로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의 위헌성

피감호자를 청송 제1, 2 보호감호소에 수용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족·친지나 일반 사회인과의 접촉이 쉽게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감호소의 위치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알맞아야 한다. 그런데 청송보호 제1, 2감호소는 수용시설에 있어 일반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와 비교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고(오히려 청송보호감호소는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상 최고의 경비등급인 초·중구금 시설이고 그 시설의 운용은 행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국 산하의 교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위치에서부터 보호감호의 목적에 너무도 적합하지 못하다. 위 감호소들을 서울에서 승용차도 쉬지 않고 달려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오지(奧地)에 그곳 지역사회와도 완전히 단절된 곳(감호소의 3면은 가파지른 광덕산에 포위되어 있음)에 위치해 있어 가족 또는 친지의 방문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감호자들은 사회와 가족·친지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좌절감·소외감에 젖을 것이며 자포자기로 인한 반항심만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사회적응훈련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출소자들의 높은 재범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현재의 청송보호감호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보호감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

다. 작업상여금 기준의 위헌성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최장 7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또다시 죄를 짓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하며 수감 중에도 열심히 근로하여 수입의 일부를 사용(使用)을 위해 쓸 수 있고 가족에게 수입의 일부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사회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될 것이다(2003년 최저임금은 1일 18200원임). 그렇지 않고 이들을 무작정 수용하여 외부와 단절시키기만 한다면 이는 보호감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호보감호실정은 피감호자에게 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지식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한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가 20-30년 전의 교도소에서 실시한 전근대적인 직업교육임), 근로보상금도 7등급으로 나뉘어 2003년 2월 현재 1일 1400원에서 58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근로보상금(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대체로 10분의 1의 수준임)은 노역의 착취일 뿐 진정한 근로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낮은 보상금을 보고 근로의욕이 생길 리 없고 저축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많은 피감호자들이 출소할 때 근로보상금 적립금으로 기십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2002년 11월 13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청송보호감호소의 출소자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을 감호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올 때 손에 쥐는 돈은 50-60만원이라고 한다). 이들은 감호소를 나간 뒤 그 돈으로 단 며칠을 산 다음 바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현재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의 90%이상이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인 바, 그것은 위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범죄 수치이다).

라. 서신검열의 위헌성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피감호자들에 대하여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피감호자들이 교도소 내의 수형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여 집행의 장소, 처우(의복, 노동과 그 부소, 접견, 서신, 두발, 교육, 근로, 직업훈련)등에 있어 자유형의 집행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을 들어 보호감호의 집행이 형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거듭처벌금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서신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청송감호소 소속 직원들이 교도소 교도관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 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하고 수·발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는 사회 복귀가 주된 목적이고 장소의 제한은 사회보호를 위해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므로,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 진행경과

민변은 현재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수감된 4명,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수감된 2명으로부터 헌법소원청구 위임을 받았고, 1차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그리고,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있는 피보호감호자들 약 500여명 역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민변에서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 위임장 300부를 발송하였으나, 청송 제2보호감호소측이 위임장 배포에 협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재판청구권을 방해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구인이 모집되는 데로, 2차, 3차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2002년 한해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세차례에 걸친 단식농성이 있었다. 외부로 알려진 피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이었지만 그들이 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은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사회보호법은 사회복귀를 촉진하다는 명분아래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격리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이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그는 '사회정화'란 미명아래 삼청교육대를 신설하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80년 사이비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그 후 20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 왔다.

정부는 사회호보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아니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아무리 상습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수형자에게 장래에 대한 '재범 우려'의 가능성만을 물어 다시 감호소에 수용하는 것을 '형벌'이라는 말 이외에 다른 어떤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또한 보호감호소의 처우가 형벌의 집행이 무엇이 다른가? 보호감호제도가 피감호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사회적 인접성을 고려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시설은 '육지 위의 섬'처럼 오지에 자리잡고 있어 사람의 발길조차 다가가기 힘들다. 감호자들의 처우는 행형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피감호자들은 최저임금의 10분지 1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받으며 노역을 해야한다. 7년의 감호기간 내내 일을 해봤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3~4백만 원을 넘지 못한다. 휴지·비누·속옷 같은 생필품마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장기 수용자가 많아 발병률도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면회나 서신, 신문과 정보의 검열과 제한, 청원이나 소송의 제한과 방해 등도 일반 교도소와 다름이 없다. 출소 후 직업과 연계될만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심성프로그램도 갖고있지 않다.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응 능력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화'라는 사회보호법의 취지도 지난 20년의 역사를 통해 결코 달성되지 못했다. 감호제도가 '교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광적인 인권침해의 온상이었음은 많은 출소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바이며, 사실 '청송'에 수감된 많은 수인들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도둑질과 싸움질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늙어 가는 무력한 전과자들일 뿐이다. 이는 피감호자의 약 75%가 절도죄로 들어온 자들이라는 점에서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며 가장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범죄는 사회가 생산해내는 병리형상'이라는 진리를 외면한 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는 엄벌 일변도의 제도는 사회가 책임져야할 몫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며 그들에게 영원한 사회의 낙오자로 남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보호법의 본질이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 역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사회보호법은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 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2003년 현재 사회보호법에 의해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수용중인 피감호자는 1600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사회보호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감호자들의 참혹한 세월 위에 세워졌으며, 이에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비틀린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사회보호법의 폐지에 나설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2003년 3월 11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

청 구 인 **1. 조 0 0**
2. 권 0 0
3. 김 0 0
4. 이 0 0
1~4 청구인들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제2감호소
5. 최 0 0
6. 강 0 0
5~6 청구인들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청송제1감호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찬운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유식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청구인 **1. 법무부장관**
2. 청송 제1보호감호소 소장
3. 청송 제2보호감호소 소장

청 구 취 지

1. (주의적으로)피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을 초중구금시설인 청송교도소와 시설이 같은 청송제1, 제2 감호소에 수용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 청송 제1 및 제2 보호감호소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근로보상금으로 1일 1,400원 내지 5,8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다
3. 청구인 조00이 2003. 1. 16. 변호사 박찬운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 및 청구인 김00이 2003. 1. 17. 변호사 장유식에게 보내기 위하여 발송의뢰한 서신을 피청구인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소장이 각 검열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1항, 제13조1항, 제18조, 제27조

침해의 원인

(1) (주의적으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 제5조
(예비적으로) 청구인들을 초중구금시설인 청송교도소와 같은 시설의 청송제1, 제2 감호소에 수용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행위

(2) 청송제1 및 제2보호감호소장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1일 근로보상금으로 1,400원 내지 5,800원을 지급하는 행위

(3) 피청구인 청송 제2보호감호소 소장이, 청구인 조00 및 김00이 변호사에게 발송하는 서신을 검열한 행위

청구 이유

1.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구인 조00은 1997. 2월 징역3년 및 보호감호처분이 확정되어 청송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다음 1999. 5. 15. 부터 청송제1감호소에 수용되었고 현재는 청송제2감호소에 수용되어 보호감호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 권00은 1997. 3월 강도상해죄로 징역4년 및 보호감호처분이 확정되어 청송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다음 2001. 3. 23.부터 청송제1감호소에 수용되었고 현재는 청송제2감호소에 수용되어 보호감호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 김00은 간음약취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 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다음 현재 청송 제2보호 감호소에서 보호감호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 이00은 폭력죄 등으로 징역형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받고, 청송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다음 현재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 최00은 2000. 4. 경 장물 취득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다음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2002. 7. 18.부터 현재까지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보호감호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청구인 강00은 1997. 5. 경 징역 5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2001. 12. 5.부터 현재까지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서 보호감호집행을 받고 있습니다.

2.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현실

(1) 현재 보호감호집행은 법무부 훈령(제447호)인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이하 처우규칙이라고 함)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집행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본형과 함께 보호감호처분이 병과된 수형자는 청송교도소에 보내지고 이곳에서 본형의 복역을 마치게 되면 바로 같은 곳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에 이송됩니다. 청송보호감호소는 제1감호소와 제2감호소로 나누어져 있는 바 제1감호소는 신입감호자와 감호자처우등급 다급, 라급 및 마급 자를, 2감호는 처우등급 가급 및 나급 자를 수용하게 됩니다(처우규칙제5조). 즉, 보호감호가 병과된 수형자는 청송교도소에서 본형을 마치고 이어 제1감호소로 이송되고 처우등급이 올라가면 제2감호소로 보내져 출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2) 청송보호감호소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육지 속의 섬을 연상시키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문방향을 제외한 3면은 까가지른 절벽의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일견 영화 빠삐용의 무대를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적어도 5시간이 소요되며 인근에는 어떤 산업공단이나 대도시도 없는 한 마디로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3) 청구인들을 비롯한 피감호자들의 생활은 바로 옆의 청송교도소의 생활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처우규칙'과 대리인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감호자에 대한 수용방법, 분류심사, 분류처우 등은 본형의 수형생활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에 대한 일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바, 이는 수형자의 생활 바로 그것입니다.

일과:

06:40 기상
06:55 점검
07:10 조식(거실에서 이루어지는 데 교도소보다 부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피감호자들의 불만이 있음)
07:10-08:05 아침방송(주로 스포츠뉴스, KBS 아침방송)
08:15 출역(작업장 이동 후 오전 작업 시작)
11:30 중식(작업장)
13:00-15:30 오후작업, 그 후 약40분간의 운동시간 있음
16:10 입실, 점검
16:35 저녁식사

17:30 저녁교화방송
20:30 취침

위와 같은 피감호자들의 생활은 모두 법무부 교정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일반 교도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4) 피감호자들에 대한 근로와 직업교육은 징역형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피감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피감호자들은 근로나 직업교육을 회피할 상황이 아니므로 거의 모든 피감호자들이 징역형의 수형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현재 8개 직업군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정보화, 조적, 타일, 건축도장, 정비, 보일러, 이용 및 미용 등입니다. 그 내용 전부가 일반 교도소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상이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나 교육의 내용 대부분이 현재의 고도산업화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외부기업으로부터 청송보호감호소측이 용역계약을 맺고 피감호자들의 작업을 하는 것은 종이쇼핑백 접기, 머리핀 조립 및 위생비닐장갑포장 등 단순 노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5) 피감호자들은 작업을 통하여 감호소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일정금액의 근로보상금을 받고 있는 바 2002년까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보상금	4,800원	3,900원	3,100원	2,400원	1,900원	1,400원	1,100원

위와 같은 보상금은 사실상 우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자들에게 장차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정착금의 성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02년 하반기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대규모의 피감호자 단식투쟁습니다. 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부는 피감호자들에 대하여 근로보상금의 인상을 약속하였고 2003년도부터는 다음 표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들이 청송보호감호소를 내방하여 직접 관계 공무원들에게 확인한 바, 피감호자들은 평균 보호감호소에서 4년 반 정도 수용되는 데 이들이 출소할 때 가지고 나가는 근로보상금은 평균 5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들에 대한 일상용품은 원래 국가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실제는 그

양과 질이 떨어져 상당한 정도는 피감호자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물론이거니와 내의류, 일용잡화 등을 위해 최소한 월 기만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보상금	5,800원	4,700원	3,800원	2,900원	2,300원	1,700원	1,400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의 피감호자들은 위와 같은 근로보상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어 바깥으로부터 영치금을 조달받고 있는 데 그 규모는 월간 수령하는 근로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사실 많은 피감호자들이 근로보상금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보상금을 많이 사용하면 처우에서 승급이 어려우므로 피감호자들은 그 몇 만원 되지도 않는 근로보상금마저도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3.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및 근로보상금 지급의 위헌성

(1)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수회한 바 있습니다(1996. 11. 28 선고 95헌바20; 1991. 4. 1 선고 89헌마17, 85, 100, 109, 12 사건 등, 특히 후자의 결정에서 그 이유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2)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보호감호제도 자체의 위헌성은 다투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호감호의 집행방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제도로서의 보호감호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문제와는 달리,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문제로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바로 이 사건에서 보호감호제도의 현실적인 집행방법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3)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감호의 목적이 형벌의 집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제1조는, 보호감호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감호의 첫째 목적은 범죄인의 사회복귀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인을 격리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목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보호감호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보호감호제도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고 우리 헌법 제12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이 되기 위**

해서는 보호감호의 집행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사회격리라는 보호감호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어떤 보호감호집행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와는 전혀 거리가 있고 오로지 범죄인과 사회를 격리시키는 것으로만 운용된다면 그것은 보호감호가 아닌 철저한 응보형에 다름 아닌 것으로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의 하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이제까지의 헌법재판소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태도는 보호감호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해서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1991.4. 1선고 89헌마17, 85, 100, 109, 12)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가 그대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도 우리의 보호감호처분은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의 보호감호처분이 오로지 범죄인을 두 번 가두어 두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다수 논리에 의해서도 그러한 집행은 위헌이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5) 현재의 보호감호집행방법이 피감호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서는 적절치 않아 목적 위반으로 헌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보안처분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은 청송보호감호소를 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의 실태에 준해 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서신검열 부분은 항을 나누어 위헌성을 지적함)만 열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피감호자를 청송제1, 2 보호감호소에 수용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족·친지나 일반 사회인과의 접촉이 쉽게 자주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호감호소의 위치부터 위와 같은 조건에 알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청송보호제1, 2감호소는 **수용시설에 있어 일반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와 비교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으며**(오히려 청송보호감호소는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상 최고의 경비등급인 **초중구금시설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시설의 운용은 행형시설을 담당하는 법무부 교정국 산하의 교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청송보호감호소는 인근에 함께 있는 청송교도소와 시설과 운영방법이 같음**) 위치에서부터 보호감호의 목적에 너무도 적합하지 못합니다. 위 감호소들을 **서울에서 승용차도 쉬지 않고 달려 4-5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오지(奧地)**에 그곳 지역사회와도 완전히 단절된 곳(감호소의 3면은 까가지른 팡덕산에 포위되어 있음)에 위치해 있어 가족 또는 친지의 방문

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감호자들은 사회와 가족·친지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 좌절감, 소외감에 젖을 것이며 사회구성원 의식의 함양은 커녕 자포자기로 인한 반항심만이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겠습니까(이것은 이들의 출소 이후 재범율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겠으나 **청송보호감호소와 청송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재범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본 대리인들이 이 사건을 위해 청송보호감호소를 방문하였던 바, 그곳의 **교정공무원들마저 이구동성으로 현재의 보호감호소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보호감호소는 대도시나 공단지역으로 옮겨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피감호자들은 범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외부의 기업체 등에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호감호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청송보호감호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보호감호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곳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무원마저 이러한 시설로는 범죄인을 양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데 어떻게 보호감호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청구인들에 대하여 **청송보호감호소를 집행기관으로 하는 근거는 법무부 훈령 제447호인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입니다. 청구인들은 바로 이 근거에 의하여 보호감호라는 미명 하에 형벌과 도무지 조금도 다름이 없는 형벌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위 처우규칙이 법무부 훈령이지만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아래에서 다시 논함).**

둘째, 청구인들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받고 있는 근로보상금의 지급은 강제노역에 다름 아닌 위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습니다.
피감호자들이 보호감호기간(최장 7년)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또다시 죄를 짓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야 하며 수감 중에도 열심히 근로하여 수입의 일부를 사용(使用)을 위해 쓸 수 있고 가족에게 수입의 일부를 보낼 수 있어야 하며 출소할 때에는 저축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감호자에 대한 근로보상금이 사회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다(2003년 최저임금은 1일 18200원임). 그렇지 않고 이들을 무작정 수용하여 외부와 단절시키기만 한다면 이는 보호감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호보감호실정은 피감호자에게 그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며(한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가 20-30년 전의 교도소에서 실시한 전근대적인

직업교육임) 근로보상금을 7등급으로 나누어 2003년 2월 현재 1일 1400원에서 58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낮은 근로보상금(**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대체로 10분의 1의 수준임**)은 노역의 착취이지 진정한 근로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렇게 낮은 보상금을 보고 근로의욕이 생길 리 없고 또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일례로 청구인 조00은 작업등급 5등급으로 종래 1일 1900원을 받다가 현재 1일 2300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 권00은 작업등급 7등급으로 종래 1일 1100원을 받다가 현재 1일 1400원은 받고 있음) . 결국 피감호자들은 수감기간을 마치더라도 아무런 밑천도 없이 사회에 나가 자립은 커녕 사회로부터 냉대만을 받는 끝에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종전보다 더 큰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피감호자들이 출소할 때 근로보상금 적립금으로 기십만을 가지고 나갑니다(2002년 11월 13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청송보호감호소의 출소자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을 감호소에서 생활을 하고 나올 때 손에 쥐는 돈은 50-60만원이라고 합니다. 청구인들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감호소의 경우 2002. 10월 말 현재 피감호자 1인당 예탁금 평균은 390,606원이며, 예탁금이 10만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 피감호자의 40%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감호소를 나간 뒤 거리를 그 돈으로 단 며칠을 산 다음 바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현재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의 90%이상이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인 바, 그것은 위와 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범죄 수치입니다). 손에 든 돈이 몇 천만원이라도 된다면 적당한 생활정착금으로서의 효용도가 있겠지만 단 몇 십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		중		상	
	나급	가급	나급	가급	나급	가급
3류	500	600	550	650	600	700
2류	650	750	750	850	850	950
1류	1100	1200	1600	2300	2500	4000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근로보상금은 형벌 수형자가 받는 작업상여금 비교하여 보다도 거의 다르지 않은 정도에 불과하며 오히려 더 열악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형자는 1일 500원에서 4000원까지를 받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본대로 **종래의 근로보상금은 수형자들의 작업상여금 지급기준 중 1류를 기준으로 그것과 거의 수준으로 책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호감호소의 근로보상금은 본질적으로 수형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이 만든 것이며, 더욱 피감호자들은 수형자에 비하여 수용생활상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수형자들에 비하여 저축은 훨씬 어려운 구조입니

다. 각종 생필품과 의료비 및 직업훈련 보충교재의 구입 등은 모두 피감호자가 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감호자가 받는 근로보상금은 실제로는 수형자의 그것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청송보호감호소에서의 보호감호의 집행은 그 전체가 위헌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근로보상금제도는 결과적으로 범죄를 국가가 양산하는 체제의 뿌리이고 그것은 무보상의 강제노역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한 인간을 범죄기계로 만들어 사회에 대량 배출하고 있다고도 극언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청송보호감호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헌법상 허용된다면 이를 어떻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6) **위와 같은 보호감호처분의 집행현실은 분명 그 동안의 헌법재판소의 다수논리에 의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위반**입니다. 곧,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그 근거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임, 본 사건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을 이것으로 삼고 있음)이나 그러는 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의 10분의 1 수준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보상금의 지급은 **헌법 제12조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반되는 보안처분이며, **제13조 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 받지 아니한다)에 위반되는 이중처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러한 보안감호처분집행은 결국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함으로서 피감호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서신 검열 행위의 위헌성

(1) 적용법조

사회보호법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형법 제18조의 2 (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은 예외로 한다.
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62조 (서신의 검열)
①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 받는 서신(법 제6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서신을 제외한다)을 검열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서신은 이를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봉함을 하지 아니하고 교도소등에 제출하게 하며, 수용자가 수령할 서신은 교도소등에서 개봉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열한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신의 발송 또는 교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서신은 당해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이를 폐기한다.
1.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2. 도주·증거인멸 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입을 기도하는 경우
3.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등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4.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42조(서신검열)
감호자의 서신 수·발은 교도관이 검열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헌성
피청구인 청송 제2감호소 소장은, 사회보호법 제42조, 행형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서신을 검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송 제2감호소의 서신검열 행위는 다음과 같이 위헌입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즉 통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서신의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단,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행형법을 적용하여 서신검열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행형법 제18조의 2에서 서신검열을 규정한 취지는, 수형자를 구금하는 목적이 자유형의 집행인바, 자유형의 본질상 수형자에게 외부와의 자유로운 교통, 통신에 대한 제한이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형자의 신체적 구속을 확보하여야 하고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해로운 물질이나 서신의 수발을 허용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신검열은 자유형의 본질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보호감호제도는 자유형의 집행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교육, 개선하는 기능을 하므로, 수형자에 대한 처우와 동일하게 외부 교통, 통신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맥락에서 외부 교통, 통신을 제한하는 서신검열은 보호감호제도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형의 집행이 아니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보안처분이다'고 판시하였고, 위 사회보호법 제42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취지는 보호감호처분이나 형법(자유형)은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집행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의 규정을 보호감호처분에 준용한다는 것이지, 보호감호처분을 형벌과 똑같이 집행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여 집행의 장소, 처우(의복, 노동과 그 보수, 접견, 서신, 두발, 교육, 근로, 직업훈련) 등에 있어 자유형의 집행과는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을 들어 보호감호의 집행이 형벌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거듭처벌금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7,85,100,109.129,167 결정). 위 헌법재판소의 취지대로 한다고 해도, 수형자와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서신에 관한 처우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유형이 신체의 자유를 필수적으로 동반한 형의 집행이고 신체의 자유가 주요한 문제임에 반하여, 보호감호제도는 사회복귀가 주된 목적이고 장소의 제한은 사회복귀를 위해 부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이기에, 서신에 관한 처우가 구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행형법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을 보면 서신발송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서신 검열을 통해 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피보호감호자에게 적용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역시 서신발송 회수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서신검열을 통해 그 내용

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소속 직원들은 교도소 교도관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송 제2보호감호소 역시 교도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소자 집필제도 운영개선'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하고 수발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송 제2보호 감소호의 피보호감호자들과 교도소 수형자 사이의 처우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 다수인이 수용되는 곳이기에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복지시설, 군대 등 다수인이 수용되는 다른 곳에서도 서신 검열이 없는데 유독 감호자들에 대해서만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보호감호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들에게 발송하고자 하는 서신을 검열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27조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사람은 누구나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거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재판을 받게 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할권 있는, 독립된 그리고 편파적이 아닌 법정이 관장하는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위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재판'이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모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듯이, 그 외의 재판에서도 역시 수용자와 변호사(대리인) 사이의 비밀 내용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데, 공정한 재판이란 정당한 재판으로서 소송내용이 외부(특히 소송의 상대방)로 유출되지 않고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전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보호감호제도를 법률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발송하려고 하는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행형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청송제2보호감호소측이 청구인들이 발송의뢰한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통신비밀의 자유(헌법제18조), 평등권(헌법제11조), 재판청구권(헌법제27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1) **'피보호자감호자분류처우규칙'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인지에 관하여**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또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이 사건에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은 바로 사회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 제정형식에 관계없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우규칙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청구인들은 위 법무부 훈령에 대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만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부적격한 경우 예비적으로 초중구금시설로서 청송교도소와 조금도 다름없는 곳에 청구인들을 수용하는 행위(권력적 사실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2) **보충성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위헌심판을 받고자 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는 법령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그 법령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구인들에 대한 청송보호감호소에서의 보호감호집행의 하나인 '근로보상금'의 지급은 그 집행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현재 어떤 절차에 의해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보호법상 사회보호위원회에 보호처분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을 주고 있지만(사회보호법 제32조3항) 어디에도 보호감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없습니다. 나아가 보호감호처분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행정처분이라

고도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행정구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로보상금의 위헌성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이나 이미 검열행위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은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거나 법률상 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1항). 그러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이러한 규정과 관계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규정에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이나 '사유가 있은 날'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대상인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조'의 위헌문제나 근로보상금 지급의 위헌 문제는 단발성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청구인들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당하고 있는 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의 제한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검열과 관련해서는 위 청구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4. 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대리인들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인 바, 민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신청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본 청구인대리인들은 지난 1년 간 청구인들과 서신교환 및 현지접견을 하여 그 실태를 파악, 오늘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003. 3.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 찬 운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 상 희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장 유 식

헌법소원재판소 **귀중**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3월 11일 (화) 이른 11시 느티나무

사 회 : 장유식 변호사

여는 말씀 : 최영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 안주리 사무국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헌법소원 경과보고 : 박찬운 변호사 (민변)
청송감호소 출소자 증언 : 출소자 2인
기자회견문 낭독 :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질의응답

● 참석언론사 : 연합뉴스,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 내일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KBS, MBC, 민중의소리, 참여사회

● 기자회견 참석단체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불교 인권위원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참여연대 · 천주교 인권위원회

● 참여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다산인권운동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등노조이주지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전교조, 민주노총(내부논의중이나 결합 의사 밝힘)

● 고문
고은 시인,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고영구 변호사
류현석 변호사
조준희 변호사
홍성우 변호사

● 공동대표
최 영 도 (변호사, 참여연대 대표)
김 용 수 (한양대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병 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 정 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순 덕 (민가협 상임의장)

● 자문위원회
박찬운 (변호사, 민변)
김동한 (성공회대 교수)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청송 출소자 1인

● 공동사무국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016-706-8105)

사회보호법 폐지 공대위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우리은행 예금주 김덕진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
454-038829-02-001 입니다.

現　　況

2003. 3. 13

治 療 監 護 所

法務行政指標

法과 秩序의 確立

力點施策

- ㅇ 嚴正한 法執行으로 國家·社會紀綱 確立
- ㅇ 완벽한 公明選擧 實施로 성숙한 民主主義 定着
- ㅇ 월드컵 등 國際行事 성공개최 積極 支援
- ㅇ 法務·檢察의 革新으로 國民信賴 提高
- ㅇ 社會的 弱者를 위한 人權保障 內實化
- ㅇ 一流經濟競爭力 실현을 위한 法的支援 擴大
- ㅇ 南北協力 증진 및 統一 대비 法的準備 强化
- ㅇ 社會親和的 矯正行政 展開
- ㅇ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保護行政 實現
- ㅇ 內實있는 電子法務行政 具現

民主와 人權이 꽃피는 先進法治社會

차 례

Ⅰ. 一 般 現 況 ---------- 2

1. 任 務 ---------- 2
2. 沿 革 ---------- 2
3. 機 構 ---------- 2
4. 職 員 ---------- 3
5. 豫 算 ---------- 3
6. 施 設 ---------- 3

Ⅱ. 收 容 現 況 ---------- 4

1. 收 容 人 員 ---------- 4
2. 入·出所 人員 ---------- 4
3. 收 容 者 內 譯 ---------- 5

Ⅲ. 治 療 活 動 ---------- 7

Ⅰ. 一 般 現 況

1. 任 務

- ㅇ 社會保護法 第8條에 依해 治療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를 收容, 保護하고 治療하며 이에 관한 調査·硏究
- ㅇ 法院, 檢察, 警察로부터 依賴받은 者에 대한 精神鑑定

2. 沿 革

年 月 日	內 容	參 考
1987. 8. 14.	治療監護所 職制公布	大統領令 第12232號
1987. 11. 3.	治療監護所 開廳	忠南 公州市 反浦面 鳳谷里
1993. 11. 18.	專攻醫 修鍊病院 指定	1~4年次 5名 修練 中
1995. 10. 15.	500病床 增築病棟 完工	'92. 12. 31. 着工
1996. 4. 16.	增築病棟 開設	藥物中毒治療室 運營
1997. 11. 10.	病院名稱 竝行使用 「國立監護精神病院」	法務部訓令 第385號

3. 機 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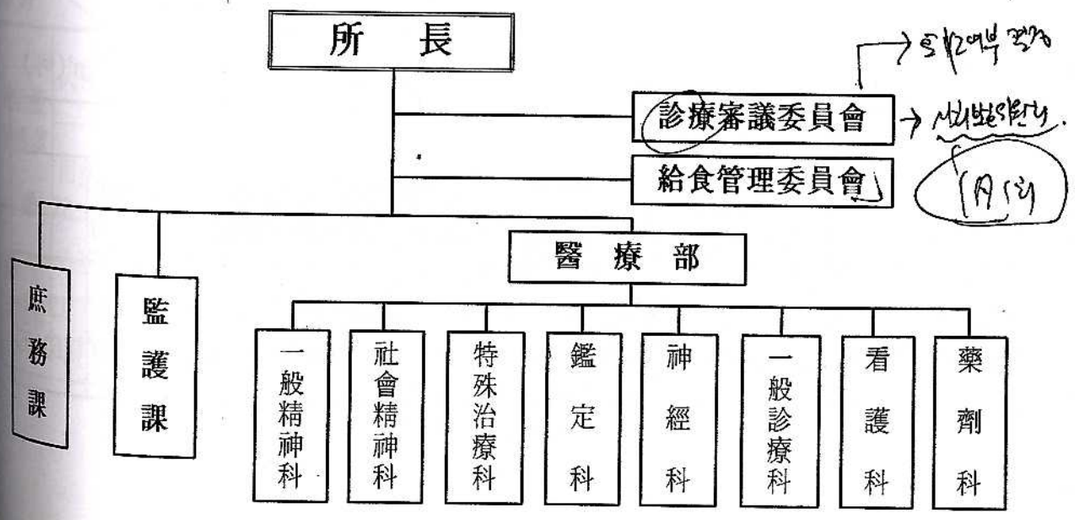

4. 職　　員

區分 ＼ 職列	計	別定職	一般職								技能職
			少年保護	醫務	藥務	看護	保健	建築	食品衛生	電氣	醫療技術	
定　員	301	11	22	13	3	74	4	1	1	1	6	165
現　員	294	10	22	7	3	74	4	1	1	1	6	165
缺　員	7	1	0	6	0	0	0	0	0	0	0	0

※定員外 : 9名 (專攻醫5名, 公衆保健醫4名) 勤務 中

5. 豫　　算

單位 : 百萬원

計	人　件　費	基本事業費	主要事業費
12,318	10,010	2,107	201

6. 施　　設

單位 : ㎡(坪)

土地				建物						
計	構內	構外		計	事務室 (28室)	病棟 (4棟334室)	寄宿舍 (3棟93室)	家族館 (1棟3室)	非常待機所 (4棟69世帶)	其他
		林野	道路等							
309,520 (93,629.37)	152,143 (46,023.05)	137,060 (41,460.46)	20,317 (6,145.86)	45,851.62 (13,870.02)	10,110.28 (3,058.34)	22,468.89 (6,796.8)	3,611.32 (1,092.41)	232.00 (70.18)	4,455.03 (1,347.64)	4,974.1 (1,504.65)

Ⅱ. 收　容　現　況

1. 收 容 人 員

定員	現員				收容密度 (坪當)	參考
	計	被治療監護者	鑑定留置者	監護委託		
1,000	828 (121)	806 (117)	21 (4)	1 (0)	0.57名	・實收容 坪數 : 1,452坪 ・1日平均 收容人員 : 822名

※ ( ) 은 女子임.

2. 年度別 入・出所人員

區分 ＼ 年度別		計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被治療監護者	入所	3,197	146	376	107	107	113	150	140	175	174	158	203	215	225	252	291	299	66
	出所	2,376	1	50	69	113	102	54	110	145	139	241	181	133	256	214	244	279	45
鑑定留置者	入所	3,153		20	48	67	72	110	177	180	213	254	281	308	404	404	309	263	43
	出所	3,132		18	48	64	65	113	170	185	203	241	289	303	402	403	324	265	39

※ 監護委託(青松保護監護所) : 入所 96 名, 出所 95 名

3. 收容者 內譯

o 罪 名 別

區分 / 性別	計	殺 人	暴 力	傷.暴行 致 死	竊 盜	放 火	强 盜	强 姦	有 害 化 學	其 他
計	806名 (100%)	299 (37.1)	139 (17.2)	59 (7.3)	70 (8.7)	45 (5.6)	23 (2.8)	41 (5.1)	98 (12.2)	32 (4.0)
男	689	238	125	50	57	37	22	41	92	27
女	117	61	14	9	13	8	1	0	6	5

o 病 名 別

區分 / 性別	計	精神 分裂	性格 障碍	精神 遲滯	癲癇	妄想 障碍	躁鬱症	알콜	藥物類		其 他
									癈藥	其他	
計	806名 (100%)	439 (54.5)	10 (1.2)	41 (5.1)	17 (2.1)	35 (4.3)	83 (10.3)	36 (4.5)	23 (2.9)	75 (9.3)	47 (5.8)
男	689	380	8	37	17	29	54	36	19	73	36
女	117	59	2	4	0	6	29	0	4	2	11

o 年 齡 別

區分 / 性別	計	20歲未滿	20~29歲	30~39歲	40~49歲	50~59歲	60歲以上
計	806 名 (100 %)	3 (0.4)	141 (17.5)	330 (40.9)	229 (28.4)	78 (9.7)	25 (3.1)
男	689	3	125	280	198	60	23
女	117	0	16	50	31	18	2

o 學 歷 別

區分 / 性別	計	無 學	初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806 名 (100 %)	29 (3.6)	139 (17.2)	158 (19.6)	366 (45.4)	114 (14.2)
男	689	23	109	135	321	101
女	117	6	30	23	45	13

o 執行期間別

區分 / 年別	計	1年未滿	1年以上 2年未滿	2年以上 3年未滿	3年以上 4年未滿	4年以上 5年未滿	5年以上 10年未滿	10年 以 上
計	806 名 (100 %)	267 (33.1)	157 (19.5)	115 (14.3)	89 (11.0)	45 (5.6)	95 (11.8)	38 (4.7)
男	689	232	126	93	79	39	84	36
女	117	35	31	22	10	6	11	2

o 前 科 別

區分 / 性別	計	初 犯	2 犯	3 犯	4 犯	5犯 以上
計	806 名 (100 %)	530 (65.8)	105 (13.0)	44 (5.5)	33 (4.1)	94 (11.6)
男	689	433	99	39	31	87
女	117	97	6	5	2	7

Ⅲ. 治 療 活 動

1. 分 類 審 査

· 入所 後 1個月間 檢查病棟(男) 및 女子病棟(11, 12病棟)에 收容
· 各種 檢查(神經機能, 放射線, 臨床心理, 臨床病理 等)로 身體, 精神狀態 診斷
· 症狀에 따른 治療指針 提示 및 擔當主治醫 指定

2. 分 類 收 容

· 重患者 病棟 (檢查病棟)
  - 重患者 및 新入 被治療監護者·鑑定留置者(男)
· 女 子 病 棟 (11, 12病棟) : 女子 被治療監護者 및 鑑定留置者
· 藥物中毒再活센터 : 痲藥類 및 藥物濫用者
· 其他 9個病棟

3. 精神科的 治療

· 擔當主治醫 指定
· 症狀에 따른 治療方法 決定
· 擔當醫師의 治療計劃에 따른 精神療法, 藥物療法, 環境療法 等 實施

4. 特殊治療 活動

· 小 集 團 治 療
  기타, 보컬관악, 지점토, 등공예, 合唱, 手織染色, 陶磁器工藝, 日常生活療法, 사이코드라마, 美術, 舞踊, 體育, 레크레이션, 은행놀이 등
· 大 集 團 治 療
  舞踊發表會, 合唱大會, 體育大會, 寫生大會, 歌謠際, 演劇祭, 映畵上映 放送을 통한 音樂治療

5. 醫療再活治療

社會技術訓練, 精神健康敎育, 斷酒敎育

6. 職業能力開發訓練 實施

· 訓練對象 : 症狀이 良好하고 職業再活訓練이 必要한 者
· 訓練種目 : 5個工科 (建築塗裝, 租積, 塗褙, 타일, 컴퓨터)

7. 外來診療制 運用 內實化

· 目　　的 : 出所者의 精神疾患再發 및 再犯防止
· 對　　象 : 治療監護終了者 中 希望者
· 期　　間 : 出所 後 5年 (1次에 한하여 延長 可)

질 의 서

질의자 : 조 석 영

헌 법 재 판 소 하경철 재판관 귀하

질 의 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 2003헌사50) 기각 결정 이유 및 보호감호에 대한 합헌 결정 이유에 대한 질의)

질의자 조 석 영

현재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피보호감호자로 수감 중

수감번호 259번

우편송달 주소: 경북 청송군 진보우체국 사서함 3호 259번

질의의 요지

1. '사회보호법 제38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 2003헌사50)에 대하여 2003. 2. 18 기각 결정을 내린바 그 이유와
2. 2002. 3. 22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 (주심 하경철)는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을 막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으며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죄 (아동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그 이유, 그리고
3. 위와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상주의적 결정을 내린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반론을 제기하오니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으로 보호감호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론

이 질의서는 헌법재판소 하경철 재판관 개인에게 질의하는 사신(私信)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질의하는 것으로 청송제2보호감호소의 허가를 얻어 작성한 문서입니다.

저(질의자)는 청송제2보호감호소에 피보호감호자(이하 '감호자')로 수용중인바 2002. 12. 초순경 헌법재판소에 〈호소문〉을 제출하여 보호감호의 위헌성과 합목적성을 상실한 점, 인권침해 실태 등을 일일이 열거하여 보호감호의 폐지를 호소한 바 있고,

2003. 1. 25 "사회보호법 제38조(자격정지)는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두 번의 〈자격정지〉라는 刑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1항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원리'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는데 2003. 2. 18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경철 재판관께서는 지난 2002. 3. 22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전원재판부의 결정 재판의 주심이었고 위 질의자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결정 재판에도 재판관으로 참여하였으므로 보호감호와 사회보호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호감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 2002. 12 초순경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호소문 : 별첨〉과 이 질의서에서

1) 보호감호는 刑罰과 전혀 다름이 없이 집행되고 있고

2) 감호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3) 사회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회를 더욱 악화시키고

4) 감호자와 그의 가족 뿐 아니라 친척와 지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하여 사실을 수긍하시는지, 수긍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보호감호가 이중 처벌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헌법재판관으로서 현장검증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실과 현실에 맞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론

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사건 2003헌사 50. 2003. 2. 18 결정)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38조(자격정지)는 헌법 제13조 1항 하단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할 원리'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2003. 1. 25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기각 결정을 2003. 2. 18 내